



2013년 교회재정세미나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에게?

일시/ 2013년 11월 15일(금) 오후 2시 ~ 4시 30분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2연수실(종로5가역)

주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www.cfan.or.kr



■ 행 사 순 서

□ 사회: 조제호 사무처장(기독교윤리실천운동)

- 14:00 ~ 14:10 취지 안내
- 14:10 ~ 14:40 발제1 기독교 공동체와 세금
 안창남 교수(강남대학교 세무학과)
- 14:40 ~ 15:10 발제2 신학적, 윤리적 관점에서 본 목회자와 세금
 고재길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문화)
- 15:10 ~ 15:20 휴식
- 15:20 ~ 15:40 현황발표 목회자 납세 실태 및 쟁점 분석
 황병구 본부장(재단법인 한빛누리)
- 15:40 ~ 16:10 발제3 자발적 납세의 윤리적, 선교적 효과
 최호운 회계사(삼화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 16:10 ~ 16:30 질의응답

■ 목 차

· 발제1 기독교 공동체와 세금 4p

| 안창남 교수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 발제2 목회자 납세문제와 교회의 공적 책임 26p

| 고재길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문화)

· 발제3 자발적 납세의 윤리적, 선교적 효과 39p

| 최호윤 회계사 (삼화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 현황발표 / 목회자 납세 실태 및 쟁점 분석 45p

| 황병구 본부장 (재단법인 한빛누리)

· 단체 소개 48p

■ 발제 1

기독교 공동체와 세금

안창남 교수(강남대학교 세무학과)

I. 여는 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복지세금국가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공동체¹⁾가 지녀야 될 세금에 대한 바람직한 입장을 정리해보고자 함이다. 복지세금국가란 복지수요를 세금으로 조달하는 형태의 국가재정상태를 의미한다. 2014년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입액은 230조원으로 추산되고 이 중 복지지출은 103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풀어 설명하면 세금 1000만원을 납부하면 이 중 400만 원 정도는 국가로부터 복지예산(육아수당, 출산수당 등)의 명목으로 돌려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종전의 세금에 대한 입장, 즉 국가에게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다는 시각에서 이제는 「정당하게 납부(세금)하고 합당하게 돌려받는(복지)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반면 기독교 공동체는, 목회자의 납세여부를 둘러싼 논쟁처럼,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마치 특권인 듯이 비춰지는 것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기독교 공동체(물론 다른 종교도 포함됨)가 국가로부터 면세혜택을 받을 충분한 이유는 존재한다. 정교분리시대에는 피차간에 간섭을 하지 않기 위해 종교단체에 대한 면세의 폭이 넓었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이후 갈수록 축소되어 왔으며, 종교 본연의 목적사업(예 : 종교 활동) 이외에는 모두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종교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세금공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의 면세혜택 확대 또는 지속주장은, 그 주장의 타당성이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과연 복지세금국가 시대에 맞는지 심각하게 살펴볼 일이다. 기독교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기독교공동체가 국가로부터 급여성활자, 영리법인 등에 비추어 상대적·우월적 세금대접을 받는 것이 과연 전도에 유익한지는 살펴 볼 일이다.²⁾ 아래에서는 세금에 대한 역사와 기능 분석에 대해 분석하였고(II), 이어 복지시대에서 세금의 역할(III)과 기독교

1) 이 글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기독교 구성원(교회, 목회자, 성도)들의 대(對) 사회적 거래 관계 및 대(對) 교회적 거래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다시 말해, 사회적 거래관계에는 성도의 사업에 대한 세금문제가 포함되고, 교회적 거래관계에는 교회의 목회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이 포함된다.

2)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공동체가 비기독교공동체로부터 멸시받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얘기는 더욱 아니다. 사회의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을 분면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하지만, 스스로 나서서 목회자 세금을 안내겠다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교회 밖의 세상과 소통을 하면서 비기독교도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사례금을 받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못낸다.”고 하면, 그들의 답변을 구지 물어보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다. 미친것들이라는 답변 밖에 더 오겠는가.

동체가 유의할 세금조항(Ⅳ)에 이들을 모아서 결론(Ⅴ)을 제시하였다.

Ⅱ. 세금의 역사와 기능

1. 세금의 역사

세금의 존재는 국가가 인류사회에 등장하기 전부터 존재했다. 부족국가시대에도 외부로부터의 적의 침략을 방어하고 스스로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부족 구성원들이 일정량의 곡식을 거두었다.³⁾

동양에서의 대표적인 세금은 조(租)·용(庸)·조(調)로 구분된다.⁴⁾

조(租)는 토지의 사용대가로 국가에 내는 부담금을 의미하고, 용(庸)은 국민의 노동력을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調)는 특산물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공물(貢物)이라고 한다.

2. 신약성경시대의 세금

예수님 생존 당시의 세금을 살펴보면, 로마법에 근거하여 식민지가 부담하는 세금과 유대인 자치법에 따른 종교세(성전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직업은 세관장이었다. 즉, 예루살렘 성곽을 중심으로 그 성문을 출입하는 자 또는 물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였다.⁵⁾ 같은 무렵에 삭개오가 등장한다. 당시 세제는 로마가 일정한 할당액을 이스라엘 세무당국에게 부여하면, 세무공무원은 그 보다 20-30% 이상 징수하고 그 차액을 착복했던 것이다. 오죽 했으면 세례 요한도 “너희에게 정해 준 것보다 더 받지 마라.” 고 했을까(누가복음 3: 12).⁶⁾ 이래서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로마인보다 오히려 세리를 더 증오하고 악질적인 사람으로 여겼을 것이다.⁷⁾ 이 시대에 군중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삭개오의 슬픔 모습도 보인다(누가복음 19 : 1-10).⁸⁾

3) 자세한 내용 : 문점식, 「역사 속 세금이야기」, 세경사, 2012 참조.

4) 현재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세목이다.

5) 마태복음 9 : 9. 영어 원문 : As Jesus was going down the road, he saw Matthew sitting at his tax-collection booth. Come, be my disciple, Jesus said to him. So Matthew got up and followed him.

6) 영어 원문 : Show your honesty, he replies. Make sure you collect no more taxes than the Roman government requires you to.

7) 마치 일제 식민지시대에 조선인 출신 경찰이나 세무공무원에 대한 조선인의 반감과 동일했다고 본다.

8) 안창남, “부자 세무서장 삭개오 4배의 변상금 제안과 우리네 현실”, 한국세정신문 칼럼, 2009. 1. 15. 주요 내용 요약 :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무공무원이 시민들에게 살갑게 대접을 받았던 시기는 거의 없는 듯하다. 직업 속성상 남의 재산의 속내를 들여다봐야 하는 어려운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세무공무원을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세금이 사회 유지의 재원인 이상, 내가 그 직업이 싫어서 그만두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워야 그 공동체가 운영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모순 속에 살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삭개오(헬라이어로는 자크카이오스 : 의로운 자 또는 순진한 자라는 의미임)이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2천여 년전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로 남아 있을 무렵, 예루살렘 옆 위성도시인 예리고(Jericho)라는 지역의 세무서장으로 있었다. 로마 식민지 시절,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원수의 나라에 바치는 직업을 가진 그가 당시 시민으로부터 따돌림과 원망의 대상이 됐음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더군다나 그는 부자였다. 세무서장이면서 부자라니? 더욱 왕따(?) 신세였으리라. 그의 인생 고민이 깊어질 그 무렵, 당시 풍운아였던 예수가 자기 관할지역인 예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보고자 했다. 만나서 자기 자신의 외로움을 호소하고 싶었으리라. 그러나 예수를 둘러싼 사람들이 하도 많아 직접 볼 수가 없어서 그는 근처 뽕나무에 올라가서 보고자 한다.(이스라엘 가보신

한편, 유대 종교 자치세로 성전세(Temple Tax)⁹⁾가 있다. 예수님이 자기 집을 들어가는 데도 성전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세금관은 분명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러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네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닢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네 뱃속으로 그들에게 내어라(However, we don't want to offend them, ……and pay the tax for both of us.).”¹⁰⁾

요즘 시대는 세관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¹¹⁾

한편, 바리새인과 헤롯당원은 예수님을 조세불복운동의 주동자로 몰아서 처형할 목적으로 로마식민지 정부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떠 본다. 이에 대한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는 하나님에게(Give to Caesar what belongs to him. But everything that belongs to God must be given to God)”이다. 현대말로 바꾸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라! 그리고 동시에 율법에 따라 십일조를 정확하게 납부하라는 것이다. 이 무렵에는 종교와 정부가 일치하던 ‘제정일치시대’에서 종교와 정부가 분리되어가는 ‘재정 분리시대’로 가고 있었다.¹²⁾

따라서 헤롯의 유대정부에게 납부하는 소득의 십일조 세금이 과연 합법적이고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그들도 고민을 하고 있었다. 왜냐면 그들이 납부한 세금이 유대가 아닌 로마정부로 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낸다면 반역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에게 물어서 그를 제거하려는 의도였다고 본다. 특히 바리새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는 반(反) 율법주의자의 지도자로 보였기

분은 아니겠지만 사막지역이어서 큰 나무는 거의 없다. 그가 키가 작아서 뿔나무에 올라갔다고 하지만, 세무서장 체면에 뿔나무에 쪼르르 올라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올라가서라도 보지 않으면 안 될 그 무슨 사건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아니나 다를까. 예수가 그를 알아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한다. 그는 큰 집에 살고는 있었지만,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직업을 가진 그에게 찾아오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그런 그의 집에, 예수가 직접 와서 묵고 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았을까. 고기도 굶고 좋은 포도주도 내놓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아니했는데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누가복음 19장8절)"라는 '폭탄선언'을 한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리 말했을까? 아니면 본심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삭개오의 재산이 부정을 통해서 축적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 이유는 삭개오의 당당하면서도 거침없고 자신있는 태도에서 볼 수 있다. 만일 그 반대라면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맹세를 하겠는가. 상식적으로 봐서 1천만 원 부정한 돈을 받았으면 본전 이외에 4천만 원을 더 줘야 하는데, 그 재산이 아무리 부자라도 부정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얼마 못 가서 그 재산은 거덜 날 것이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이 그 정도도 계산 못했겠는가. 그냥 팔자러니 생각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았다면, 삭개오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뿔나무에 올라갈 일도 없었을 것이며,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삭개오의 외로움이 묻어나서 속이 찡하다. … 우리나라도 자기 자신의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서 삭개오처럼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라도 돌려줄 수 있다'는 세무공무원이 훨씬 많을 것이다. … 세무공무원이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부패하면 그 사회가 망하게 되어 있다. 이를 뒤집어 보면 투명한 세무제도와 충성스런 세무공무원이 있다면 그 사회는 흥하는 것 아닌가? 우리 사회의 흥망성쇠가 세무공무원에 달려 있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아닐 것이다.

9) 성전에 출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인두세 성격의 세금을 부과했다(마태복음 17 : 24-27).

10) 오늘 날 한국 사회에서 본의 아니게 목회자 일부에서 사례금에 대한 세금을 못 내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주장의 정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그와 같은 주장이 비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헤아려 볼 일이다.

11) 로마시대의 세금제도를 개괄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고 비 로마시민은 수입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했다. 반면, 간접세는 모두 납세의무가 부여되었는데 매출액의 1%정도가 부과되었다. 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는 대신에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병역의무가 부과되었다.

12) 바리새인이 종교와 정부의 권력을 모두 잡고 있었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때문이다.

3. 중세시대의 성직자에 대한 세금 부과권 쟁투

성직자에 대한 과세권을 국왕이 가지느냐 아니면 교황이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는 중세시대의 중요한 정치문제였다. 십자군 전쟁시절에는 성직자세가 부과되기도 했다. 이에 교황이 반발하여 성직자로서 국왕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자는 파문을 하겠다고 했고, 이에 대응해서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필립4세는 교황을 퇴위시키려고 까지 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교회세를 포기하도록 했다. 이는 성직자 및 교회의 면세특권에 대한 시민의 저항과 반발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789년 11월에는 교회재산을 몰수하고 십일조는 폐지가 되었다. 따라서 성직자들의 생활비는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독일에도 영향을 주어 국가가 교회세를 징수하여 각 교단에 분배하고 있다.

세금의 역사는 인권투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그나카르타의 주된 내용은 세금 조항이다.¹³⁾ 같은 내용은 권리청원에서도 반복되고 있고 명예혁명에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과세할 수 없다.” 까지 발전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인권선언(1789)에서는 현대 조세제도의 근간인 조세법률주의¹⁴⁾와 조세공평주의¹⁵⁾가 선언되었다.

4. 동학농민운동과 조세조항권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쌓아놓고 물세(水稅)를 더 내라고 독촉한다.¹⁶⁾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로 왜인(倭人)들이 군산항 근처에 득시글거리기 시작했고 쌀값은 폭락했다. 왕조로써 생명을 이미 잃은 조선에 대해 청나라와 러시아가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지 이미 오래전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이다. 그래서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 척양척왜(斥洋斥倭)의 기치를 걸고 1894년 1월 고부에서 동학교도이자 농민이고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던 전봉준이 일어났다.

왜 하고 많은 고을 중 고부인가? 사실 이미 진주, 성주, 상주 등에서 고부와 유사한 형태의 운동이 있었다. 전국적으로 확대만 안 됐을 뿐이다. 고부에는 특별한 게 있었다. 여기에는 조병갑과 전봉준의 운명적인 만남 이외에도 실학과 동학의 기막힌 조우가 있었다. 학문적으로 보면 망해가는 왕조를 뒷받침했던 성리학 대신 국민들의 삶을 걱정하는 개혁적인 실학사상이 움트기 시작했고, 여기에 평등사상을 강조한 동학교의 역할이 고부 농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줬다. 결국 역사의식을 가진 선비가 실학이라는 학문과 평등의 종교를 만나서 혁명이

13) 대표적인 조항으로 “대표자가 없는 곳에는 세금이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를 들 수 있다. 즉, 국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면 세금을 못내겠다는 것이다.

14) 인권선언 제14조 :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해 공공의 조세 필요성을 확인하여 그것을 자유롭게 승인하며 그 집행절차를 따르고 또 그 배분, 부과, 징수와 기간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15) 인권선언 제13조 : 공공의 권력의 유지와 행정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공동의 조세가 불가결하다. 그것은 모든 시민간의 부담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분담되지 않으면 안 된다.

16) 아래 글은 안창남, ‘동학농민혁명과 농민의 조세저항’, 한국세정신문 칼럼, 2012. 6. 25. 일지에서 발췌하고 요약했음.

됐던 것이다.

정조가 집권한 시대에는 서양에서 프랑스 대혁명(1789년)이 있었고, 조선에서는 다산 정약용 등 실학과(實學派)가 등장해서 정조의 개혁과 궤를 같이 했었다. 반계 유형원은 이미 균형재정을 역설했고 다산 정약용은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당시 수구세력의 반대로 정조나 실학파의 개혁 시도는 물거품이 됐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그 뒤 세대를 살았던 불쌍한 조선인의 몫이었다.

조선 재건의 마지막 기회를 기득권층이 스스로 차버린 것이다. 세금이 잘못이니 결국 일개 왕이 아닌 왕조가 거덜 난 것이다. 결국 일제 36년간의 치욕을 맛보게 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시 전라도는 전국 쌀의 3분의 2이상을 생산하고 있었다. 그 무렵 세제는 전세(田稅)가 주된 세목이었던 관계로 전국 세수의 68% 이상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조병갑은 그곳의 세무서장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의 욕심에 비례해 당시 납세자였던 서민들은 납세능력을 초과한 납세의무를 부여받았던 것이다. 반면 양반님들은 면세 혜택을 받아서 문제가 없었고…….17)

5. 헌법상 납세의무

현대적 의미의 세금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② 국민에 대한 각종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③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④ 금전 급부¹⁸⁾ (金錢給付) 라고 정의된다.¹⁹⁾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한다.” 고 보고 있다.²⁰⁾

Ⅲ. 복지시대의 세금 역할

이와 같은 세금의 역할, 즉,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상적 발전을 거쳐 발전해 왔다.²¹⁾

17) 미국을 독립시킨 결정적인 요인은 1773년 영국의 차조례(Tea Acts)의 실시에 따라 동인도회사로부터 수입되는 관세가 높게 부과되자, 이에 반발하여 독립전쟁이 발발했다.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요인은 당시 스페인의 가혹한 세금제도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18) 급부(Leistung)란 행정법상 용어로서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행하여지는 채무자의 행위를 의미한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금전급부 행위이나 예외적으로 현물납부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법인세법 제65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등에서는 토지 등의 물납(物納)이 허용되고 있으나, 이는 결국 해당 재산의 사용가치라기 보다는 오히려 금전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물납제도 역시 금전급부의 특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19) 최명근, 「세법학총론(2007 개정판)」, 세경사, 2007, pp. 29~32. 이에 따르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을 가진 단체가 재정조달을 목적으로 그의 과세 권력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 대해 강제력에 의해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이며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고 정의하고 있다.

20) 헌법재판소 89헌가95, 1990. 9. 3. 결정

- 홉스의 리바이어든(1651년) :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 공포로부터의 자유
- 로크의 통치론(1690년) : 천부인권의 보호(자연법의 자연상태) → 편파성에 의한 분쟁해결
-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1776년) : 보이지 않는 손 → 국방, 치안, 교육, 최소한의 공공사업
-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1863년)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공리 극대화
- 롤스의 자유주의(Liberalism)(1971년) :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과 공정한 사회 → 빈곤 타파
- 노직의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1974) : 결과의 평등 → 기회의 평등

1. 논쟁의 핵심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세입이 230조원이고 이중 복지예산으로 100조원 남짓 책정되었다고 한다.²²⁾ 즉, 세금을 낸 금액의 40%는 다시 복지예산으로 돌려받는 다는 것이다(참고자료 2 참조).

지금까지는 복지정책과 증세정책이 따로 놀았다. 복지정책은 주로 진보진영에서 주장하고 증세정책은 보수진영에서 반대를 한다. 재미있는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의 '증세 없는 복지 사회구현'이라는 구호다. 진보의 표도 얻고 보수의 표도 안심시키는 걸작이었다. 그러나 빛을 내어서 복지를 하는 것은 누구나 어느 정부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이 뒤집어쓴다. 지금 남유럽의 경우가 그렇다. 사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방향성은 좋았다고 본다. 단지 그와 같은 개정을 통해서 얻을 세수입만으로는 복지재원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증세 대상이 주로 근로자의 소득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향할 복지수준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증세를 했으면 한다. 유럽 국가 수준의 복지라면 그들의 조세부담률만큼 우리나라도 증세를 하여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복지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이 부분은 정치권의 몫이다.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세법이 개정되면 된다. 그렇지만 명심할 것은 우리나라는 복지 이외에도 통일이라는 숙제가 있다. 이 비용도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재정은 적어도 균형예산이든 흑자예산으로 가야 한다. 가장 좋은 사회는 사도행전 4장 34절에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세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복지)” 고 본다. 이를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에둘러 표현하고 있다. 공화란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복지를 받는 자보다 복지재원을 감당하는 자가 더 보람된 인생이 아닐까 한다. 그 이유는 하늘이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사용한 자이기 때문이다.

21) 옥동석, “한국의 재정·조세 현황과 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0. 1., p. 1.

22) 아래 글은 안창남, ‘복지 그리고 세금’, 국민일보 2013. 8. 19일자 칼럼에서 발췌하여 요약하였다.

2. 국민개세주의 원칙

국민개세주의란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면세특권을 누리던 귀족층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 도입된 논리다. 현대에 와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조금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종전에는 일반 서민이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부유층에게 하는 구호였지만, 지금은 증세론에 시달리는 부유층이 서민층에 대해 조금이라도 세금 부담을 하라는 취지로도 들린다.

최근 우리 사회에 보편적 복지 논쟁이 뜨겁게 일었다. 하지만 간과한 것은 복지는 필연적으로 세금 논쟁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²³⁾ 누가 뭐래도 복지는 세금으로 한다. 하지만 누구나 혜택은 많이 받고 싶고, 세금은 적게 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세금 납부액에 비례해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기도 하고, 세금을 많이 내지만 복지 혜택은 별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어렵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의 경우 현재 소득상위 20%가 내는 세금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국민부담률, 즉 국민이 내는 세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금액은 국민총생산 대비 34%이지만 우리는 25%에 그치고 있다.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국가는 50% 가까이에 이른다.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나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크다고는 볼 수 없다(참고자료 1 참조).

특히 2011년의 경우 근로소득자 중 36%가 과세 미달자였다. 또 자영업자의 21%가 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사업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간이사업자가 32%나 된다. 이는 소득이 있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 중 3분의 1 이상이 세금을 별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배분하여 과세하는 인두세를 도입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중간계층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적든 많은 적정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래야만 국가 재정건전성이 유지된다.

정부가 올해 만든 제1차 세법개정안은 비과세 감면 축소 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재원 조달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국민개세주의 원칙에는 충실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과 정치권의 조세저항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하루 만에 변경해버렸다. ‘새가슴 조세정책’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135조 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한단 말인가.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편협한 시각이다.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연봉 3450만~5500만 원 정도의 중산층을 연간 16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세금 납부도 내키지 않아 하는 속 좁은 납세자로 폄하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 그들도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단지 고소득층의 세금부담 증가율이 별로 높지 않았음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것이다.

복지는 결국 세금으로 할 수밖에 없다. 빚을 내서 하는 것은 국가채무를 증가시켜 나라정

23) 아래 글은 안창남,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안내고...’, 동아일보 칼럼, 2013. 9. 24.에서 발췌하여 요약하였다.

제를 더 어렵게 한다(참고자료 3 참조). 국민 대부분은 세금을 뚝뚝하게 능력껏 내고, 복지 혜택을 정당하게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정부는 ‘중세 불가 약속’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다.²⁴⁾ 가장 합리적인 복지조세 국가 모델은 구성원이 능력껏 일하고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공평하게 과세하고, 동시에 구성원이 필요한 만큼의 복지 혜택을 주는 사회다. 복지를 제대로 하려거든 세제를 올곧게 운영해야 한다.

3. 목회자 세금 납세에 대한 의견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집단 중 하나가 기독교다. 현직 대통령부터 상장기업 임원 중 상당수가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²⁵⁾ 기독교는 조선시대 말기부터 의료·교육 사업을 통해 이 땅에 감동을 주었다. 6·25한국전쟁과 산업화 및 민주화 과정에서 교회는 힘없고 쫓기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듬었다. 이를 눈으로 본 청소년들이 자라 기독교인이 되고 사회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나 목사가 헌신적이고 희생적임에도 요즘 기독교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혹독하다. 교회 세습, 불투명한 교회 재정, 성폭력, 교회권력의 타락 등이 주된 요인이다. 이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다.

최근 불거진 목사 사례비에 대한 세금납부 시비도 그렇다. 먼저 세법 차원에서 보면 논쟁 거리조차 안 된다. 정치권에서 기독교인의 표를 의식해 멈칫하고 있을 뿐이다.

첫째, 세법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목사 사례비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소득이다. 그 많은 돈이 소득이 아니면 용돈인가. 모자(母子)지간 용돈도 큰 금액이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둘째,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정치는 교회 수입에 비과세한다. 하지만 교회로부터 돈을 지급 받는 목사는 이와 상관없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근로자라니?’ 이는 교회 안에서나 할 말이지 교회 밖 세상에 대고 할 말은 아니다. 근로자인들 뭐가

24) 적극적인 납세를 하자는 주장에 대해 그 보다 앞서 작은 정부 구현, 정부지출의 축소, 비과세 및 감면 조항의 정리가 우선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다. 복지사회에서는 정부역할이 증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과세나 감면조항의 축소는 각기 나름의 타당성과 존재 의미가 있다. 쉽게 없앨 수가 없다고 본다. 참고 자료 : 안창남, “복지재원 마련 묘책은 없다”, 중앙일보, 2013. 3. 13. 칼럼 : 요즘 부가가치세제에 대해 이런 저런 개편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135조원 중 세입예산에서 조달하기로 한 55조원을 마련하는 데 부가가치세제가 가장 쉽고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돼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세수입을 올리는 세목이다. 지난해의 경우 납부된 국세 203조원 중 부가가치세가 54조원으로 26.6%를 차지한다.……하늘 아래 완전한 새것이 없다는 말처럼 인간이 고안한 제도는 대부분 명(明)과 암(暗)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현금 사용을 부추겨 오히려 어렵사리 정착된 부가가치세제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다. ……세울 인상 없이 과연 가능한가. 세제만을 고쳐서 매년 15조원을 더 징수할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느냐는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자칫 납세자 사생활 침해나 부당한 재산권 침해 또는 기존 제도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 현 정부가 국가 재정 건전성에 관심이 있다면 복지 수준을 세입 증가에 맞추어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정부는 복지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보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25) 아래 글은 안창남, ‘목사님, 세금 좀 내시죠’, 아시아 경제신문 칼럼, 2012년 3월 20일에서 발췌하여 요약하였다.

어떤가. 목사는 예수님에게 고용된 자 아닌가. 특권의식이다. 헌법은 특권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군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군목은 세금을 낸다.

셋째, 미국과 유럽에선 목사 사례비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유독 한국만 반대한다. 이중과세라 안 된다? 월급쟁이는 소득세 내고 남은 돈으로 생필품을 살 때 또 부가가치세를 낸다. 이중과세다. 헌법재판소는 과세기술상의 문제라면서 이중과세는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

더구나 종교 차원에서 보아도 이 논쟁은 교회에 유익하지 못하다. 첫째, 예수님조차 자기 집인 성전을 드나들면서 당시 유대 법에 따라 성전세를 납부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불필요한 논쟁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이다. 세상과 쓸데없이 다툴 이유와 시간이 없다.

둘째, 전도에 걸림돌이 된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듯 마음과 영혼이 아프면 교회에서 목사로부터 치유를 받는다. 교회의 본질과 목사의 기능은 분명 고귀하고 소중하다. 이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금 때문에 비난을 애써 사서들이 이유가 무엇인가.

셋째, 납세자가 되면 금전적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여러 제도적 혜택이 부여된다. 통계상 90% 이상의 목사는 설사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도입돼도 면세점 이하로 실질적인 금전 부담은 거의 없다.

넷째, 세금 납부를 통해 교회의 재정과 집행이 투명해진다. 이를 제대로 하려면 모든 것이 정직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다. 정직하지 않은 교회나 목사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 바르게 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기독교인은 매일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물어보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자이다. 존재와 당위라는 문제의식을 늘 머리맡에 두고 사는 사람이다. 세상은 아직도 교회에 기대가 남아 있어서 애증 어린 비판을 하고 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세금 납부는 최소한의 사회규칙이다. 목사라고 예외일 수 없다. 예수님도 스스로 납부하셨다.

IV.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이 유의하여야 할 세금 조항

기독교 공동체를 포함한 사회구성원이 상식적으로 지켜야 될 세금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절대적 금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포

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되,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및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²⁶⁾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이외에도 면세유의 부정 유통(조세범처벌법 제4조),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조세범처벌법 제5조), 채납처분의 면탈 (조세범처벌법 제7조), 장부의 소각·파기(조세범처벌법 제8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조세범처벌법 제9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명의대여행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등은 조세범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2. 공격적인 조세회피 행위 : 상대적 금지

조세회피란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세법의 빈 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탈법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당행위다. 예를 들면, 특수관계자 사이에 시가보다 낮게 팔거나 높게 구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시가와 차액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를 하면 되지만 조세범처벌법상의 적용대상은 되지 않는다.

한편, 공격적인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는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꾀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특히 조세피난처 이용, 페이퍼 컴퍼니 이용,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용, 변칙적인 파생상품 이용 등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²⁷⁾

26)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27) 참고 : 안창남, “조세피난처와 페이퍼 컴퍼니”, 파이낸셜 뉴스 칼럼, 2013. 7. 11. 최근 비영리 인터넷 독립언론인 뉴스타파가 몇 차례 발표한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서류로 존재하는 회사)가 일반인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요소, 즉 탈세 소지가 짙은 조세피난처라는 지역 개념과 권리 남용의 소지가 많은 페이퍼컴퍼니라는 법적 요소를 결합해 기업이 교묘하게 탈세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탈세 기업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과세 관청은 최선을 다해 이를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 하지만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있는 기업이 모

각 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OECD는 2015년에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3. 합법적인 절세행위 (Tax Planning) : 적극적 이용

절세행위는 납세자의 권리 중 하나다. 그리고 세법이 그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사용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해당 세액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소득공제, 비과세제도, 준비금 및 충당금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4. 쟁점 사항

기독교 공동체와 관련된 주된 세법상 쟁점은 아래와 같다.

-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비과세 여부 :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비과세함.

- 교회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교회로부터 제공된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당해 사택은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됨.

-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

두 탈세했다는 가정은 무리가 있다. 첫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도 줄여야 될 비용의 하나다. 조세피난처는 세금이 아예 없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조세정보 교환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이다.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이곳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명하다. 애플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피난처 이용이 그 좋은 예다. 그리고 외환거래가 자율화된 이후에는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진출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지도 않다. 반면 조세피난처가 위대한 조세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전통시장에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서로 가격할인이나 덤을 주는 것과 유사하다. 이 결과 기업이 조세피난처로 쏠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 세계에 있는 조세피난처를 다 없애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등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이유는 미국도 네바다 주 같은 조세피난처를 여러 곳 두고 외국투자자본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그곳에서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는 알 수 있도록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쪽으로 타협을 했다. 정보교환이 된다면, 돈을 어디서 벌었든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그것은 우리나라 세법이 숙인주의 과세체계여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내소득과 해외소득 모두를 국내에서 과세하기 때문이다. 이래서 우리나라도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편 경제 활성화의 첫발이 자본 유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제주도 일부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만들어서 건전한 외국투자자본이나 기술회사 등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창조경제가 별거인가.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둘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기업의 운영은 때론 필요하다. 상법상 회사란 인적설비와 물적 설비를 갖춘 법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금융업 등은 인적 및 물적 설비가 그리 필요치 않다. 몇몇 사람과 돈만 있으면 된다. 사람도 한국본사 직원이 겸직해도 된다. 조세피난처도 이런 형태의 회사를 용인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과 거래한 외국 업체가 페이퍼컴퍼니 형태를 요구하기도 한다. 선박이 그 대표적인 예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 관련 법규도 외국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해외에서의 막대한 손실부담 위험이 국내 본사에까지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위험절연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위 두 가지 논점을 종합해 보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 할 것은 못 된다. 다만, 이를 남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국내과세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하는 것은 비난과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비영리 종교단체(법인)가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됨.

- 교회 담임목사 사택 양도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납부 여부 :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법인세법 시행령 · 제92조의2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교단체인 교회가 해당 교회 소속 성직자인 원로목사, 부목사, 교육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에게 3년 이상 제공된 사택을 처분할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 종교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 목사 단독으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현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쓰는 경우 과세여부 : 성직자가 받는 소득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세 징수대상이 되는 것이며, 교회 등 종교단체의 소득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 경우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교회의 해산시 다른 교회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교회의 식당 및 카페에서 음식물을 교인에게 유상을 제공하고 그 이익금을 선교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식당 및 카페로 사용하는 부분은 취득세 등 추정 여부 : 교회의 식당 및 카페에서 음식물을 교인에게 유상을 제공하고 그 이익금을 선교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식당 및 카페로 사용하는 부분은 취득세 등이 추정됨.

- 교회 소유묘지 양도시 과세여부 : 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됨.

5. 기타

세금은 ‘거래(transaction)를 기초로 하여 작동된다. 그러나 거래는 민법, 상법, 국제법 등에서 발생하며, 이들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에 표시된다. 따라서 세법에 대한 이해는 물론 민사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이해 및 해당 규정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²⁸⁾

VI. 닫는 글

기독교 공동체는 세금에 대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다시 말해, 국가로부터 면세만을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납세를 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것인가?

첫째, 적극적인 납세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선교나 전도의 관점에서 보면, 전 국민이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기독교 공동체가 일반 국민의 눈높이도 못 미칠 정도의 납세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동기와 원인 여부를 떠나서,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둘째, 기독교 공동체의 적극적인 탈세행위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정 신고 등의 방법을 통해서 납세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국가권력도 한시적 기간을 부여하여 스스로 자정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독교 공동체가 스스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그렇다고 해서 국가권력이 기독교 공동체의 수익이나 재산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엄연히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의 존재 목적은 구별되어야 하고 세무조사의 접근 방법도 달라야 한다고 본다. 미국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미국국세청이 교회에 대해 세무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참고자료 4 참조). 미국은 목회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교회 역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일반 영리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해당 규정의 적용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이는 교회나 목회자와 과세관청 및 일반 납세자 사이에 납세에 대한 신뢰가 쌓인 덕분이라고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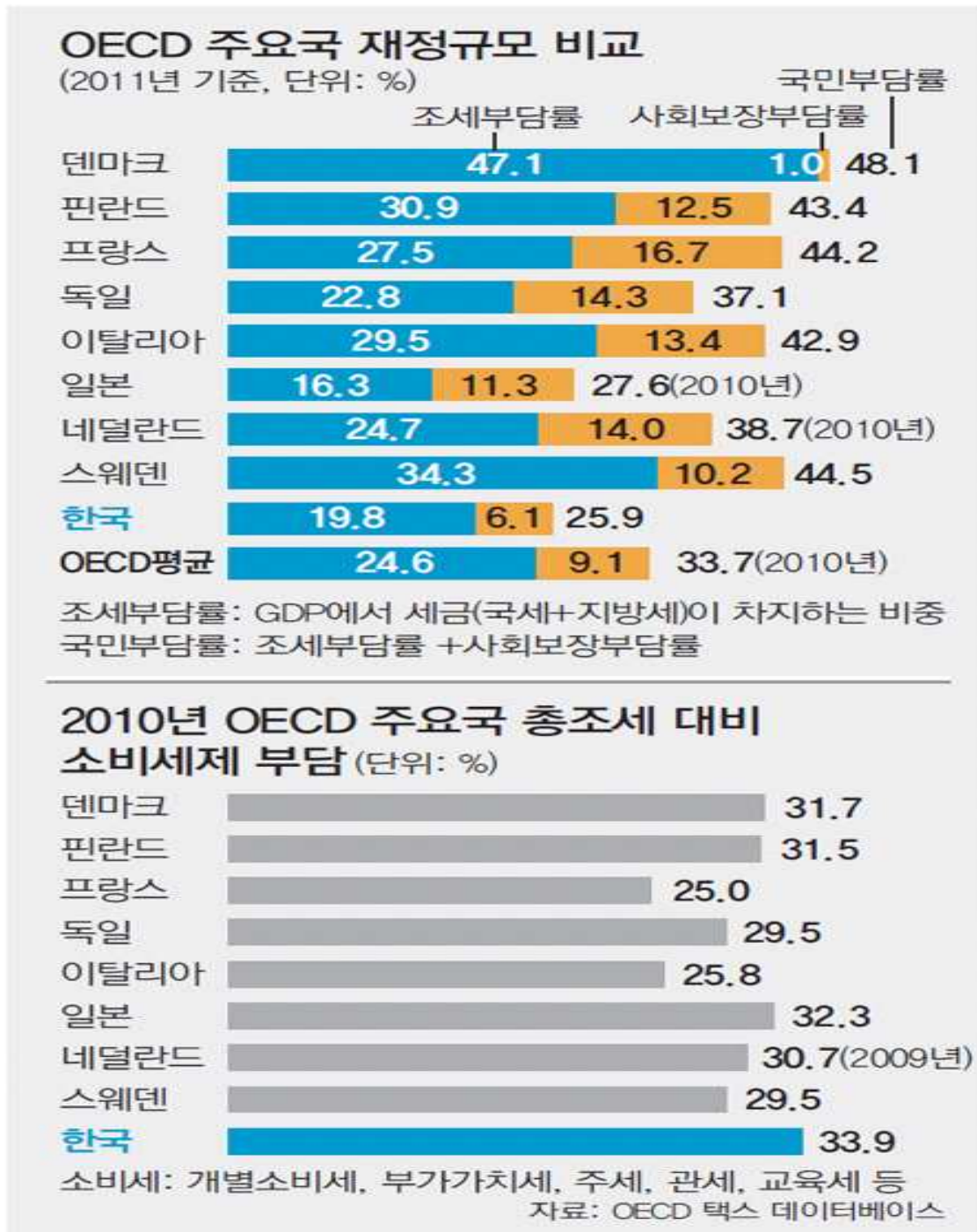
넷째, 기독교공동체는 세법 뿐 만 아니라 민법과 사법 등의 규정을 잘 준수하여서 교회공동체(교회)의 업무 집행시 사회법과의 충돌과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교회도 비영리단체이니 만큼 교회 내에서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그 행사시 더욱 민사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목회자나 교회의 세금 납부에 대해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지

²⁸⁾ 기독교공동체가 지탄을 받고 있는 사건의 대부분은 세법 위반이라기보다는 민사법의 업무상 배임죄가 가장 많다. 민사법에 대한 무지와 무시가 화근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목회자 등의 절대적 권한의 남용 행위가 민사법 위반에 따른 형법 및 세법 적용에 까지 미쳐오는 경우가 많다.

만, 그 대안을 선택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해결되지 못할 사안은 없다고 본다. 끝.

<참고 자료 1> 우리나라 재정 규모 및 조세부담률 비교



(안창남, 동아일보 칼럼에서 재인용)

<참고 2> 주요국가의 정부기능별 재정 배분

(단위: GDP 대비 %)

국가 연도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태리	영국	스웨덴	미국	이스라엘	한국
정부기능	2011	2011	2011	2011	2011	2010	2009	2011	2010
일반공공행정	6.43	6.12	4.62	8.62	4.38	6.95	4.88	6.57	3.98
국방	1.81	1.06	0.91	1.52	2.21	1.55	4.95	6.55	2.58
공공질서 및 안전	1.75	1.58	1.33	2.01	2.19	1.38	2.30	1.69	0.98
경제사업	3.49	3.51	4.13	3.57	2.57	4.58	4.27	2.59	5.80
환경보호	1.06	0.66	1.25	0.89	0.86	0.34	-	0.65	0.46
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1.90	0.56	0.75	0.68	1.05	0.73	1.31	0.46	1.70
보건	8.24	6.99	7.33	7.36	6.79	7.07	8.70	5.23	2.85
오락, 문화 및 종교	1.40	0.82	0.36	0.55	0.92	1.21	0.31	1.73	0.71
교육	6.04	4.23	3.57	4.24	5.75	6.96	6.71	7.37	3.98
사회보호	23.79	19.47	18.05	20.48	14.83	21.54	8.95	11.54	5.87
합계	55.90	45.00	57.04 ¹⁾	49.93	41.70	52.40	42.39		29.28 ²⁾

주: 1) 통계상 불일치 14.75% 포함

2)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수입을 총지출에 포함시켜 계산한 수치.

(출처 : 옥동석, 위 보고서, p. 14)

<참고문헌 3>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총 금융부채비율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캐나다	70.4	66.7	71.2	82.4	84.0	83.8	84.5	81.4
프랑스	71.2	73.0	79.3	91.2	95.8	100.1	105.5	107.3
독일	69.8	65.8	69.8	77.4	86.8	87.2	88.5	87.8
스웨덴	53.9	49.3	49.6	51.8	48.9	48.7	48.0	46.0
스페인	46.2	42.3	47.7	62.9	67.1	75.3	87.9	90.9
이탈리아	116.7	112.1	114.6	127.7	126.5	119.7	122.7	122.1
아일랜드	29.0	28.6	49.5	71.1	98.4	114.1	121.6	126.9
일본	166.7	162.4	171.2	188.8	192.7	205.5	214.1	222.6
한국	28.5	28.7	30.4	33.5	34.6	34.7	34.5	33.9
뉴질랜드	26.6	25.7	28.9	34.5	37.4	44.3	48.4	50.5
영국	46.0	47.2	57.4	72.4	81.9	97.9	104.2	108.2
미국	66.4	67.0	75.9	89.7	98.3	102.7	108.6	111.2
OECD 전체	76.0	74.5	81.0	92.5	98.7	103.0	107.6	109.3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 91 7 June 2012.

(출처 : 옥동석, 위 보고서, p. 11)

<참고자료 4> 미국세법상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규정

Sec. 7611. Restrictions on church tax inquiries and examinations (교회에 대한 조사의 제한)

TITLE 26, Subtitle F, CHAPTER 78, Subchapter A, Sec. 7611.

STATUTE

(a) Restrictions on inquiries

(1) In general

The Secretary may begin a church tax inquiry only if - (A) the reasonable belief requirements of paragraph (2), and (B) the notice requirements of paragraph (3), have been met.

(2) Reasonable belief requirements

The requirements of this paragraph are met with respect to any church tax inquiry if an appropriate high-level Treasury official reasonably believes (on the basis of facts and circumstances recorded in writing) that the church - (A) may not be exempt, by reason of its status as a church, from tax under section 501(a), or (B) may be carrying on an unrelated trade or busines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513) or otherwise engaged in activities subject to taxation under this title. (3) Inquiry notice requirements

(A) In general

The requirements of this paragraph are met with respect to any church tax inquiry if, before beginning such inquiry, the Secretary provides written notice to the church of the beginning of such inquiry.

(B) Contents of inquiry notice

The notice required by this paragraph shall include - (i) an explanation of - (I) the concerns which gave rise to such inquiry, and (IS) the general subject matter of such inquiry, and (ii) a general explanation of the applicable - (I) administrative and constitutional provisions with respect to such inquiry (including the right to a conference with the Secretary before any examination of church records), and (II) provisions of this title which authorize such inquiry or which may be otherwise involved in such inquiry. (b)

Restrictions on examinations

(1) In general

The Secretary may begin a church tax examination only if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2) have been met and such examination may be made only - (A) in the case of church records, to the extent necessary to determine the liability for, and the amount of, any tax imposed by this title, and (B) in the case of religious activities, to the extent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an organization claiming to be a church is a church for any period. (2)

Notice of examination; opportunity for conference

The requirements of this paragraph are met with respect to any church tax examination if - (A) at least 15 days before the beginning of such examination, the Secretary provides

the notice described in paragraph (3) to both the church and the appropriate regional counsel of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and (B) the church has a reasonable time to participate in a conference described in paragraph (3)(A)(iii), but only if the church requests such a conference before the beginning of the examination. (3) Contents of examination notice, et cetera

(A) In general

The notice described in this paragraph is a written notice which includes - (i) a copy of the church tax inquiry notice provided to the church under subsection (a), (ii) a description of the church records and activities which the Secretary seeks to examine, (iii) an offer to have a conference between the church and the Secretary in order to discuss, and attempt to resolve, concerns relating to such examination, and (iv) a copy of all documents which were collected or prepared by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for use in such examination and the disclosure of which is required by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5 U.S.C. 552). (B) Earliest day examination notice may be provided

The examination notice described in subparagraph (A) shall not be provided to the church before the 15th day after the date on which the church tax inquiry notice was provided to the church under subsection (a). (C) Opinion of regional counsel with respect to examination

Any regional counsel of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who receives an examination notice under paragraph (1) may, within 15 days after such notice is provided, submit to the regional commissioner for the region an advisory objection to the examination. (4) Examination of records and activities not specified in notice

Within the course of a church tax examination which (at the time the examination begins) meets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s (1) and (2), the Secretary may examine any church records or religious activities which were not specified in the examination notice to the extent such examination meets the requirement of subparagraph (A) or (B) of paragraph (1) (whichever applies). (c) Limitation on period of inquiries and examinations (1) Inquiries and examinations must be completed within 2 years

(A) In general

The Secretary shall complete any church tax status inquiry or examination (and make a final determination with respect thereto) not later than the date which is 2 years after the examination notice date. (B) Inquiries not followed by examinations

In the case of a church tax inquiry with respect to which there is no examination notice under subsection (b), the Secretary shall complete such inquiry (and make a final determination with respect thereto) not later than the date which is 90 days after the inquiry notice date. (2) Suspension of 2-year period

The running of the 2-year period described in paragraph (1)(A) and the 90-day period in paragraph (1)(B) shall be suspended - (A) for any period during which - (i) a judicial proceeding brought by the church against the Secretary with respect to the church tax inquiry or examination is pending or being appealed, (ii) a judicial proceeding brought by

the Secretary against the church (or any official thereof) to compel compliance with any reasonable request of the Secretary in a church tax examination for examination of church records or religious activities is pending or being appealed, or (iii) the Secretary is unable to take actions with respect to the church tax inquiry or examination by reason of an order issued in any judicial proceeding brought under section 7609, (B) for any period in excess of 20 days (but not in excess of 6 months) in which the church or its agents fail to comply with any reasonable request of the Secretary for church records or other information, or (C) for any period mutually agreed upon by the Secretary and the church. (d) Limitations on revocation of tax-exempt status, etc.

(1) In general

The Secretary may - (A) determine that an organization is not a church which - (i) is exempt from taxation by reason of section 501(a), or (ii) is described in section 170(c), or (B) (i) send a notice of deficiency of any tax involved in a church tax examination, or (ii) in the case of any tax with respect to which subchapter B of chapter 63 (relating to deficiency procedures) does not apply, assess any underpayment of such tax involved in a church tax examination, only if the appropriate regional counsel of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determines in writing that there has been substantial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and approves in writing of such revocation, notice of deficiency, or assessment. (2) Limitations on period of assessment (A) Revocation of tax-exempt status (i) 3-year statute of limitations generally

In the case of any church tax examination with respect to the revocation of tax-exempt status under section 501(a), any tax imposed by chapter 1 (other than section 511) may be assessed, or a proceeding in court for collection of such tax may be begun without assessment, only for the 3 most recent taxable years ending before the examination notice date. (ii) 6-year statute of limitations where tax-exempt status revoked

If an organization is not a church exempt from tax under section 501(a) for any of the 3 taxable years described in clause (i), clause (i) shall be applied by substituting "6 most recent taxable years" for "3 most recent taxable years". (B) Unrelated business tax

In the case of any church tax examination with respect to the tax imposed by section 511 (relating to unrelated business income), such tax may be assessed, or a proceeding in court for the collection of such tax may be begun without assessment, only with respect to the 6 most recent taxable years ending before the examination notice date. (C) Exception where shorter statute of limitations otherwise applicable Subparagraphs (A) and (B) shall not be construed to increase the period otherwise applicable under subchapter A of chapter 66 (relating to limitations on assessment and collection). (e) Information not collected in substantial compliance with procedures to stay summons proceeding.

(1) In general

If there has not been substantial compliance with - (A) the notice requirements of subsection (a) or (b), (B) the conference requirement described in subsection (b)(3)(A)(iii), or (C) the approval requirement of subsection (d)(1) (if applicable), with respect to any

church tax inquiry or examination, any proceeding to compel compliance with any summons with respect to such inquiry or examination shall be stayed until the court finds that all practicable steps to correct the noncompliance have been taken. The period applicable under paragraph (1) or subsection (c) shall not be suspended during the period of any stay under the preceding sentence. (2) Remedy to be exclusive

No suit may be maintained, and no defense may be raised in any proceeding (other than as provided in paragraph (1)), by reason of any noncompliance by the Secretary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f) Limitations on additional inquiries and examinations

(1) In general

If any church tax inquiry or examination with respect to any church is completed and does not result in - (A) a revocation, notice of deficiency, or assessment described in subsection (d)(1), or (B) a request by the Secretary for any significant change in the operational practices of the church (including the adequacy of accounting practices), no other church tax inquiry or examination may begin with respect to such church during the applicable 5-year period unless such inquiry or examination is approved in writing by the Secretary or does not involve the same or similar issues involved in the preceding inquiry or examination. For purposes of the preceding sentence, an inquiry or examination shall be treated as completed not later than the expiration of the applicable period under paragraph (1) of subsection (c). (2) Applicable 5-year period

For purposes of paragraph (1), the term "applicable 5-year period" means the 5-year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the notice taken into account for purposes of subsection (c)(1) was provided. For purposes of the preceding sentence, the rules of subsection (c)(2) shall apply. (g) Treatment of final report of revenue agent

Any final report of an agent of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shall be treated as a determination of the Secretary under paragraph (1) of section 7428(a), and any church receiving such a report shall be treated for purposes of sections 7428 and 7430 as having exhausted the administrative remedies available to it. (h)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 (1) Church

The term "church" includes - (A) any organization claiming to be a church, and (B) any convention or association of churches.

(2) Church tax inquiry

The term "church tax inquiry" means any inquiry to a church (other than an examination) to serve as a basis for determining whether a church - (A) is exempt from tax under section 501(a) by reason of its status as a church, or (B) is carrying on an unrelated trade or busines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513) or otherwise engaged in activities which may be subject to taxation under this title. (3) Church tax examination

The term "church tax examination" means any examination for purposes of making a determination described in paragraph (2) of - (A) church records at the request of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or (B) the religious activities of any church. (4) Church records (A) In general

The term "church records" means all corporate and financial records regularly kept by a church, including corporate minute books and lists of members and contributors. (B) Exception

Such term shall not include records acquired - (i) pursuant to a summons to which section 7609 applies, or (ii) from any governmental agency. (5) Inquiry notice date

The term "inquiry notice date" means the date the notice with respect to a church tax inquiry is provided under subsection (a). (6) Examination notice date

The term "examination notice date" means the date the notice with respect to a church tax examination is provided under subsection (b) to the church. (7) Appropriate high-level Treasury official

The term "appropriate high-level Treasury official" means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or any delegate of the Secretary whose rank is no lower than that of a principal Internal Revenue officer for an internal revenue region. (i) Section not to apply to criminal investigations, etc.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 (1) any criminal investigation, (2) any inquiry or examination relating to the tax liability of any person other than a church, (3) any assessment under section 6851 (relating to termination assessments of income tax), section 6852 (relating to termination assessments in case of flagrant political expenditures of section 501(c)(3) organizations), or section 6861 (relating to jeopardy assessments of income taxes, etc.), (4) any willful attempt to defeat or evade any tax imposed by this title, or (5) any knowing failure to file a return of tax imposed by this title.

■ 발제 2

목회자 납세문제와 교회의 공적 책임

고재길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문화)

1. 서론

최근에 이르러 종교인 납세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199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종교인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반대론 사이에 나타났던 논쟁의 열기는 전혀 식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의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목회자의 자발적인 납세운동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교인, 특별히 목회자의 납세는 목회자의 사례비에 적용되는 납세를 의미한다. 본 소고에서는 종교단체의 납세문제가 아니라 종교인, 목회자 개인의 납세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된다.²⁹⁾ 이러한 시점과 전제 하에서 본 발제자는 다음의 주제 - “목회자 납세문제와 교회의 공적 책임” -를 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한다. 미리 결론을 언급한다면 본 소고는 기본적으로 종교인 납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종교인 납세를 반대하는 입장이나 신중론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을 전제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의 납세문제를 한국교회 공동체가 함께 풀어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는 것에 있다. 그럼으로써 오늘의 세미나가 납세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상대방의 견해를 경청하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 이 발표가 선한 일을 함력하여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길 원한다. 본 소고는 다음의 순서 - 2. 종교인에 대한 과세³⁰⁾ 3. 목회자 납세 논쟁의 현황 4. 납세문제에 대한 신학적 검토 5. 결론: 교회의 공적인 책임이행의 한 형태로서의 납세 - 에 따라 진행된다.

2. 종교인에 대한 과세³⁰⁾

1) 국내 종교별 사례(examples)

(1) 개신교: 개신교의 성직자인 목사에게는 “보통 매달 급여를 받고,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들은 사택과 차량을 제공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유지비와 사택의 각종 공과금 등 유지비나

29) 개신교 목회자 수는 약 12만 여명으로 파악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교단 소속교회는 60여개 개신교 교단, 65,000개 교회이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약 80%는 ‘면제점 이하의 사례비’(4인 가족 기준 월 173만원 이하)를 받는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납세의 대상이 되는 개신교 목회자의 비율은 약 20%로 생각할 수 있다.

30) 종교인의 과세에 대한 이 부분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내부에서 통용되고 있는 목회자의 사례비를 ‘급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논문저자의 견해를 미리 밝힌다. 이원주, “종교단체와 성직자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와 법』 4권 특별호 (2011.12), 67-68.

생활비 및 자녀들과 성직자 자신의 교육비까지 교회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부대비용은 기본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을 때가 많다. 따라서 개신교 목회자의 경우 “교회로부터 받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2) 천주교: 천주교의 신부와 수녀 역시 매달 급여를 받는다. 그 액수가 적기 때문에 급여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에 사택, 차량, 교육비를 더할 경우 정확한 액수의 산정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개신교의 성직자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없다. 그렇지만 퇴직 시 교구에서는 생활비를 매달 지급하며 아파트와 같은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불교: 불교의 경우 일반적인, 공식적인 급여는 없다. 약간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보시라고 한다. 참선을 하는 선승의 경우에는 급여가 거의 없으며 포교활동을 주로 하는 포교승은 여비 명목의 자금을 보조비의 형태로 약간 받는다. 그렇지만 조계종 총무원이나 조계사 같은 큰 사찰의 승려의 경우는 일반 사찰의 그것과 다르다. 즉 “월급과 유사하게 지급되는 보시금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어 매월 정기적으로 보시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4) 종교인 과세 분류

각 종교의 성직자들은 크게 볼 때 소득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성직자가 만약 종교단체를 운영하거나, 계속 · 반복적인 저술 · 강연 및 설교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 소득, 종교단체에 종속되어 그 종교단체에서 일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이러한 소득이 계속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종교단체에 종속되어 일하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퇴직소득”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성직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성직자의 소득에 대해 별도의 비과세규정이 없고, 소득세법상 위와 같은 소득분류가 가능하므로 현행 세제 내에서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이것에 대해 강제로는 납세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스스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받아주고 있다.

2) 외국의 종교인 사례³¹⁾

(1) 미국

미국의 경우 성직자들은 세금을 납부한다. 이것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한 것”에 있다. 즉 미국세법은 “성직자를 자영업자(Self-Employer)로 간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자영업자들은 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연방정부에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을 납부한다. 그리고 그들은 일정한 점수를 올린 다음에

31) 위의 책, 69-71.

은퇴를 하는데 이 때 정부는 “은퇴한 성직자에게 사회보장기금을 지급”한다. 성직자들의 경우 그들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교회가 성직자를 위해 급여를 지불하고 연금을 납부했을 경우에 은퇴한 성직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은퇴한 성직자는 정부의 사회보장기금과 교회의 연금을 동시에 받으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³²⁾

(2) 독일

독일의 가톨릭과 개신교의 성직자는 “공무원과 유사하게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고, 국가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³³⁾ 국가가 지급하는 성직자의 급여는 “교회세(Kirchensteuer)”로부터 나온다. 독일에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도들은 자기들의 소득세의 약 8%~10%를 ‘교회세’로 납부한다. 교회를 유지하는 비용이나 사업비·건축비 등 교회와 연관된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비용도 바로 이러한 교회세에서 나온다.

(3) 캐나다

캐나다의 성직자들은 일반 다른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국가에 내고 있다. 즉 그들은 일반 국민들과 동일한 과세 적용의 대상이다. 성직자들은 종교단체에서 지급받고 있는 보수 등에 대해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고 있다. 그들은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보조금 수령 등을 위해 무조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캐나다에서는 “성직자에 대한 소득세신고의 무에 예외가 없다.”³⁴⁾

3. 목회자 납세 논쟁의 현황

여기에서는 종교인 납세 논쟁, 구체적으로는 목회자 납세 논쟁에 대한 현황의 쟁점을 정리한다. 아래의 세 가지의 논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목회자 납세 논쟁의 현황은 최근의 이 주제에 관한 토론에 따르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보인다.³⁵⁾

1) 소득의 성격에 대한 의견대립³⁶⁾

이것은 소득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인식에서 나타나는 대립이다. 이것은 “목회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가 혹은 목회자를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는 세법상의 관점을 적용할 것인가의 입장차이”라고 볼 수 있다. 목회자 납세 찬성론은 조세형평성의 관점에서 볼 때 목회자의 납세는 “당위적 측면”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곧 “목회자의 소득

32) 김충홍, “미국성직자 세금정책은?”, 뉴스앤조이(www.newsjoy.co.kr), 2006.2.25.

33) 장정미, “종교인 납세당연 vs 마녀사냥”. 시사뉴스피플(2008.3.3)

34) 이안나, 캐나다의 자선단체와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 연구, 국세청(2008), 55-56.

35)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본 발제문의 3. 목회자 납세 논쟁의 현황 중의 4) 납세문제에 대한 최근의 논쟁의 내용 - (1), (2) - 을 참고하라.

36) 문시영, “목회자 납세를 통해 본 교회의 공공성”, 새세대윤리연구소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8), 82.

역시 납세의 대상"이라는 측면에 있다. 목회자 납세 반대론 또는 신중론자들은 "목회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생활비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을 펴다. 이러한 주장의 중요한 근거는 "목회자를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지 않고 있는 현행 세법"이라고 한다. 또한 목회자들은 납세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통해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목회자의 사례비는 이미 "납세를 마친 교인의 헌금에서 나온 소득"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있다. 이 외에도 어떤 이들은 "목회자에게는 납세를, 교회와 법인에는 비과세"를 말하기도 한다.

2) 납세와 국가의 간섭에 대한 논쟁³⁷⁾

목회자 납세 찬성론자들은 "목회자 납세를 통한 국가적 복지혜택의 수혜가능성을 강조한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복지혜택의 수혜자는 "면세점 이하의 절대다수의 목회자들"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납세는 곧 "사랑의 실천"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조세권을 앞세운 국가의 간섭"에 대해 걱정한다. 즉 교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결과적으로 교회의 자율성과 종교적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효율성에 근거하여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이 입장은 납세대상이 되는 목회자들은 소수에 불과한데 이들이 내는 세금에 기대어서 "면세점 이하의 절대다수 목회자들을 위한 복지에 국가가 나서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3) 납세에 대한 국제적 관행에 대한 논쟁³⁸⁾

목회자 납세 찬성론은 경제협력개발(OECD)에 속한 국가들 가운데서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성직자의 보수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목회자 납세에 대한 정당성을 말한다.³⁹⁾ 이와는 달리 반대론자들은 한국사회의 전통과 관습에 기초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한다. 즉 "성직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종교재산에 대한 비과세와 함께 한국사회에서 확립된 제도이며 이 전통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⁴⁰⁾

4) 납세문제에 대한 최근의 논쟁

종교인 납세문제는 최근의 한국교회의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 주제에 대한 최근의 논쟁들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NCCK 목회자 납세연구위원회 공청회

NCCK 목회자 납세연구위원회는 다음의 주제 - "한국교회와 목회자 납세" - 를 가지고 2012년 7월 5일(목) 오후 3시에 기독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납세 찬반론에 대한

37) 위의 책, 83.

38) 위의 책.

39) 배원기, "OECD 회원국 모두 과세 성직자들도 소득세 내야" <중앙일보> 2008.3.12일자 인터넷판

40) 김상철, "성직자 비과세 전통 무너뜨려선 안 돼" <크리스천 투데이> 2008.3.21일자 인터넷판

각 발제자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A. 박원호 목사(주님의교회 담임목사, 기독교교육학 박사, 예장통합)는 성직자의 과세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역은 경제도 포함”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발제자의 견해에 따르면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추구하는 공동체(롬 14:7)이다. 교회는 이 땅 위에서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분법적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목사직은 특권층일 수 없고 도리어 목회자 과세를 통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목회자의 납세는 “세상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⁴¹⁾

B.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칼빈대 교수)는 목회자의 납세에 대해서 “조건부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그는 목회자들을 세금의 “미납자나 부정적인 집단으로 보거나, 교회재정의 투명성을 언급하면서 교회의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있는” 사회의 분위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움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현재 약 12만 명의 개신교 목회자 중 4만여 명은 최저생계비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2만여 명 정도가 실제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국가가 조세정의를 언급한다면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빈곤계층의 목회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²⁾

(2) 경실련 납세문제 토론회

경실련은 다음의 주제 -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 방안” - 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2013년 3월 21일)하였다. 각 발제자들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A. 김광윤 교수(아주대 경영학부)는 “국민개세주의(헌법 제38조)를 근거로 종교인도 국민이므로 국가운영경비인 세금 부담에 대하여 예외 없어야 하며 종교인은 사회의 목탁으로서 다른 국민에 비해 더욱 솔선수범해야 하고, 종교인의 탈세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과세당국이 직무유기하지 말고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과세 방안으로는 소득의 구분을 근로소득으로 할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할 것인지를 시행령이나 관련 통칙에 명기하고, 소득세 신고/납부절차를 종교현장에 적용하기 쉽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하며 일선 세무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납세하고자 하는 종교인에게 친절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⁴³⁾

41) 박원호, “목회자 납세추진 찬성에 대해- 성직자 과세에 대한 안타까움”, NCKK 공청회(2012년 7월 5일) 자료집(한국교회와 목회자 납세), 3-7.

42) 이억주, “목회자 납세 추진 반대(문제)에 대해 - 종교인 과세논란”, 위의 책, 8-10.

43) 경실련 홈페이지,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357054

B. 문병호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는 “우리나라에서 교회와 목회자의 비과세는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정립되어 60년 이상 시행되어 온 일종의 불문법(관습법)과 같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이와 충돌하는 입법을 하려면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학적이거나 법학적인 전문 의견을 청취하고, 종교인들과 일반인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적정절차가 공개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교회 중 80% 이상이 (5만 5천 교회 중 4만 5천) 자립을 할 수 없는 형편이며, 12만 목회자 중 과세 대상자는 2만에 불과하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거둔다고 해도 그것이 미비하여 과연 행정적인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점을 드는 절충설도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은 성직자 납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현불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⁴⁴⁾

C.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는 “종교인 과세문제는 종교의 문제를 국가 과세권 행사와 연계지어 국가에 의한 종교 간섭하려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헌법 제38조의 국민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려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상 어떠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이며 현 시점에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적인 잣대에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부터 논의를 좁혀 조세정의, 조세의 공평성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실현가능한 대안제시가 필요하고 종교 활동을 반드시 돈과 연계지어 과세문제와 별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은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⁴⁵⁾

D. 이만우 교수(고려대 경영대)는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수령했다면 사업소득이 아니면 근로소득 범주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신성한 종교 활동을 돈벌이 영리사업 활동으로 볼 수는 없고 교인의 헌금을 사업상 수입금액으로 치부할 수는 없어 소득구분상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일부 법원판결에서 생활보조금 성격의 지원만 받고 있는 부목사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대상 근로자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려는 근로기준법 해석의 문제이며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세법과는 무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⁴⁶⁾

E. 이병대 사무총장(한국교회언론회)은 “정부가 종교인 소득세 부과를 유보했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종교인 소득세 부과에 대한 국민의 정서이며 국민 65% 이상이 종교인 소득세 부과를 당연히 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종교인들을 온갖 사회 혜택을 누리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몰염치한 사회 특권층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어차피 국민개세주의나 조세 형평의 원칙, 그리고 국민 정서에 의해, 교회의 건덕을 위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자율적인 납세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44) 경실련 홈페이지,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357054

45) 경실련 홈페이지,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357054

46) 경실련 홈페이지,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357054

고 주장했다.”⁴⁷⁾

4. 납세문제에 대한 신학적 검토

1) 루터(M. Luther)

납세반대론에 따르면 목회자는 직업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성직자들이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납세를 반대하는 입장은 교회가 목회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활비를 급여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목회자의 봉사에 대한 사례비라고 한다. 이 입장은 목회자의 성직이 일반인들의 다른 직업과 동일시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다른 직업인들의 직무수행은 근로 또는 노동이 될 수 있지만 성직자의 직무수행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본 발제자는 이러한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렇지만 특별히 목회자만을 성직자로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납세반대론을 주장하는 분위기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후, 성직의 범주는 목회자의 영역만이 아니라 세상의 일반적인 직업의 영역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⁴⁸⁾ 루터는 그의 글,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The Address to the German Nobility*)을 통해 그 유명한 만인제사장직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⁴⁹⁾에 대해 주장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중세기적 성과 속을 분리시킨 중세의 이분법적 구조를 파괴시킨다. 그럼으로써 그는 “은혜와 신앙으로 구원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루터는 중세의 사제중심의 상황 속에서 과감하게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교황, 감독, 사제 그리고 수도승들만이 영적 지위(the spiritual estate)에 있고 왕과 영주, 농부와 기능공들은 세속적인 지위(the temporal estate)에 있다고 하는 생각은 순 날조된 생각이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진정으로 영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상호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직책(office)이 다를 뿐이다”⁵⁰⁾

47) 정실련 홈페이지,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357054, 그리고 그는 “목사의 사역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배와 성례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깨우쳐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데 전념하는 사명자일 뿐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직업이나 노동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성도의 직업과 노동은 그 자체로 신성하고, 존귀한 것이나, 목사의 신적 소명에 의한 영적 봉사는 그 자체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목사의 소득을 근로소득세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므로 세법 개정을 통해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부과 세목을 별도로 정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부과 세율과 공제 항목도 별도로 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357054

48)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심상법교수(충신대)도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처럼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거룩한 부름(소명)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이 없으며 모든 신자는 다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직은 일반직과는 구별된 특수성을 가지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명하신 영혼구령과 복음전파와 가르침을 위한 특수한 영적 사명의 수행직’(딤후 5:17)으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일반직과 구별하여 그것을 성직이라고 부르지만 이러한 직 또한 넓은 의미에서의 근로이기도 하다(고전 9:9과 딤후 5:18).” 그의 견해에 따르면 성직과 근로는 구별되며 이러한 구별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납세가 “성직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다. 심상법, “목회자 납세에 관한 소고”, 예장총회(합동) 목회자세금납부대책 연구위원회, 『2013년 목회자 세금납부대책연구 공청회 자료집』, 10-11.

49)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서울: 기독교문사 1991), 139.

50) 위의 책. 이와 같은 만인제사장직에 대한 루터의 견해는 그의 다른 글 - 『교회의 바벨론 유수』(*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 『그리스도인의 자유』(*The Freedom of a Christian*) -에서도 계속 나타난다. 루터에 따르면 모든 기독교인

2) 칼빈(J. Calvin)

목회자의 납세를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는 정교분리의 원칙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납세요구를 통해 국가가 교회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견해와 연결된다. 여기에서는 국가의 납세요구는 교회에 대한 국가의 간섭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로 하여금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든다. 목회자 납세반대론의 이유를 정교분리의 원칙에서 찾는 것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를 따를 때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교회)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영역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시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교분리는 중세시대에서 나타났던, 국가에 대한 교회의 과도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확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종교를 보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때 교회는 국가의 선한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차원에서 응답해야 한다. 이러한 주제를 생각할 때 종교개혁자, 칼빈의 견해는 큰 도움이 된다.

“..... 인간에게는 이중적인 정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정부로서 양심이 경건의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받는 영역이요, 다른 하나는 정치적 정부로서, 양심이 인간들 사이에서 유지되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의무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교육받는 영역이다. 보통 영적인 관할 영역과 세속적인 관할 영역으로서, 전자는 영혼의 삶에 관한 것이요, 후자는 세상의 삶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내적인 정신을 규제하며 후자는 외적인 행동을 규제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를 영적인 왕국이라 부르고 후자를 정치적 왕국이라고 부른다.” (기독교강요 III. xi x. 15).⁵¹⁾

루터는 하나님이 교회(하나님의 오른손)와 국가(하나님의 왼손)를 통하여 이 세상을 섭리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루터의 두 왕국사상은 칼빈에게 이르러 더욱 발전하였다. 이것은 칼빈이 영적인 정부와 정치적 정부를 강조하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칼빈은 롬 13: 552) 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위하여” 국가의 공직자에 순종해야 하는 것에 대해 언급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양심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하는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의 영적인 정부이다. 종교인 납세논쟁은 단지 최근의 일만이 아니다. 이것은 최근 20여 년간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그 이후 개신교 목회자들 중에서는 자발적으로 납세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자발적으로 납세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영적인 정부”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의무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교육받는 영역”으로서 존재하는 양심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나친 생각일까?

들은 세례와 동시에 이미 제사장직을 받는다. 그리고 그는 벰전 2:9 말씀에 기초하여 왕, 구두수선장이, 농부, 목사 등이 구원에 근거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도 교역자는 다른 평신도들과 비교할 때 지위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며 기능상 다른 것이 강조되고 있다. 위의 책, 139-140.

51) 위의 책, 500.

52)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3) 카이퍼(Abraham Kuyper)

화란의 신학자이며 정치가로서 활동했던 카이퍼는 칼빈의 신학적 영향 아래에서 그의 “영역주권론”(sphere sovereignty)을 주장하였다. 그의 영역주권론은 “인간의 삶의 구별된 영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한다. 카이퍼는 국가의 절대적 통치를 반대한다. 그것은 국가가 죄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한 절대적 주권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카이퍼는 “사회의 다원적 형태”에 대해 주목한다.

“카이퍼에 따르면 각각의 영역은 그 자신의 범주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각각의 영역은 자신의 한계 안에서 자신만의 주권을 소유한다. 카이퍼는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이른 사회에 대한 다원적 견해를 주장하게 되었고 따라서 정부와 교회와 교육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주권 아래에서 작동한다.”⁵³⁾

이러한 카이퍼의 영역주권론은 교회공동체가 공공의 영역에 참여하게 하는 신학적 기초를 만들어 주었다. 특별히 그가 주장한 영역주권론은 “기독교신앙인들로 하여금 교회가 직접 정치 영역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면서도 사회의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자극하였다.” 결국 카이퍼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사회적 공동체의 삶과 공적인 삶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⁴⁾

카이퍼의 견해를 고려할 때 교회공동체는 직접적인 형태로 정치의 영역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목회자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치, 문화, 교육, 경제 등의 다양한 영역에 고유한 달란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목회자의 납세문제는 교회의 삶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삶의 영역 안에서도 살아가는 목회자에게는 국가와 사회가 제기하는 공공의 문제이고 공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적인 이슈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을 풀어나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목회자는 카이퍼가 주장한 “사회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 납세문제는 이제 목회자 개인의 사적인 이슈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사회를 섬기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목회자라면 누구든지 생각해야 하는 공적인 이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은 납세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 본회퍼는 “사회성의 신학”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사회성이

53) Vincent E. Bacote, *The Spirit in Public Theology: Appropriating the Legacy of Abraham Kuyper* (Baker Academic: Grand Rapids, Michigan, 2005), 62. 임성빈, “한국교회의 사회참여를 위한 토대모색: 공공신학을 중심으로”, *하나님나라와 교회의 현실참여 1* (서울: 장신대출판부, 2010), 116-117.에서 재인용.

54) 위의 책.

란 기본적으로 공동체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회성은 개인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주의와는 구별되며 또한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고유성을 빼앗아가는 집단주의와도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사회성은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개인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한다. 그는 사회성의 관점에서 교회를 생각한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의 계시만을 드러내는 계시공동체가 아니다. 교회는 계시공동체인 동시에 사회적 공동체(Gemeinschaft)라고 한다.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적 공동체의 삶과 분리해서 살아갈 수 없다. 즉 교회는 가정, 지역사회, 크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회적 공동체의 역사와의 연관성 하에서 살아간다. 교회는 계시공동체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여러 제도들(institutions)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교회의 교회됨은 “타자를 위한 예수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나사렛 예수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다.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인인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부터 교회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한다. 타자를 위한 섬김의 삶을 통해 교회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한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 그때 교회이다. 교회는 인간의 사회적 삶의 세상적 과제를 지배하면서가 아니라 도움을 주고 섬김으로써 관여해야 한다. 교회는 모든 직업인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이며 ‘타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⁵⁵⁾

본회퍼의 견해를 주목할 때 목회자의 납세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목회자는 개인인 동시에 그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간다. 목회자는 교회공동체의 구성원인 동시에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적 공동체들의 현실 안에서 살아가는 사회의 한 구성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납세를 “인간의 사회적 삶과 세상적 과제”를 실천하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납세가 타자를 위한 방식이 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목회자 납세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를 향한 최근의 비판들을 고려할 때 한국교회는 더 이상 타자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교회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서 발생한 교회세습, 성추문, 재정부정 등의 부정적인 사건들은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더 추락시키고 있다. 목회자의 납세 문제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고 높이는 차원에서 목회자 납세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55) Dietrich Bonhoeffer, *Widerstand und Ergebung*, hrsg. von. C. Gremmels/ E. Bethge/ R. Bethge in Zusammenarbeit mit I. Toedt, DBW 8 (Guetersloh: Guethersloher 1998), 560.

5) 공공신학(public theology)

본회퍼의 “사회성의 신학”은 사회적 관계성에 기초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 하에서 공공신학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의 공적 이슈에 대한 교회의 공적인 책임성을 다루고 있다.⁵⁶⁾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정치, 경제, 역사 등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즉 사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는 기독교신학에 있어서 공공성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공공신학의 견해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의 토대 위에서 공공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민사회를 주도하는 윤리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칼빈주의자인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학에 많은 영향을 받은 미국의 공공신학자,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는 공공신학의 정체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공적인 논쟁들이나 문화, 사회, 과학, 기술, 경제, 정치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자 하는 신학의 한 종류이며, 또한 비기독교 전통들이나 사회과학, 역사과학들과 더불어 비판적인 대화를 하고자 하는 신학의 한 종류이다.”⁵⁷⁾

공공신학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서 공공신학의 기본 내용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공공신학이란 성경과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 뿌리를 둔 것으로 기독교 신앙과 실천의 사사회 현상에 직면하여 하나님나라의 비전 하에 그리스도인 개인들의 공적 신앙 양육과, 공적 공동체로서의 공교회 형성을 통해 공공의 선을 지향하는 여러 차원의 공적 삶을 형성하고 변형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들이 확고한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여러 차원의 공적 삶에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가치관을 다른 전통이나 학문과의 대화를 통하여 제시하고, 이를 변형시켜나가는 데 기여하는 신학이다.”⁵⁸⁾

결국 이러한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목회자의 납세는 큰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공공신학은 교회공동체가 목회자의 납세문제를 능동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주문한다. 납세문제는 한국사회 안에서는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차원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때에 교회는 공적인 논쟁이 된 납세문제를 더 이상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일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납세가 국가와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선(Common Good)의 실현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것의 심화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목회자 납세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56) 문시영,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91-93.

57) Max L. Stackhouse, 심미경 역, 『지구화 시민사회 기독교윤리』 (서울, 도서출판 패스터스 하우스, 2005), 15.

58) 장신근, “공적신학이란 무엇인가?” 이형기 외,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서울: 북킹덤사, 2010), 79.

5. 결론: 교회의 공적인 책임이행의 한 형태로서의 납세

지금까지 필자는 종교인 납세문제와 교회의 공적인 책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의 자리에서 필자는 다음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정치권은 종교인에게 과세를 요구하는 정책의 기본 의도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국가는 종교를 보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정 종교에 대한 압박이나 부담을 주려는 불순한 의도 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는 목회자들이 납세할 경우 면세점 이하의 사례비로 살아가는 목회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면세점 이하의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들이 목회를 계속하는 것은 목회가 하나님의 소명에 기초한 사역임을 알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그들의 깊은 영성 때문이다. 목회자에 대한 납세 요구가 이들의 소중한 자존심을 어떤 형태로든지 훼손시키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2) 국가는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종교인, 특히 개신교 목회자들과 교회를 탈세집단으로 폄하하는 부정적인 분위기의 쇄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목회자들과 교회는 성직자 비과세라고 하는 관습법과 성직 수행을 근로행위로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는 현 세법에 따라서 사례비를 받았으며 그 이유에 근거하여 납세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목회자와 교회 역시 간접세는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납부해왔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개신교에 대한 시민사회의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3) 목회자의 납세는 교회의 공적인 책임이행의 한 형태로 인식되어야 한다. 목회자의 납세는 공공선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목회자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 살아간다. 목회자는 하늘의 시민인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그가 속해 있는 사회적 공동체의 현실과 공적인 과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목회자는 국민과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공적인 이슈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 과정을 통해 공동의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한국교회는 납세문제를 더 적극적인 차원과 능동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선교적 차원을 고려하면서 사회의 공적인 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시민사회와 대화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추락한 사회적 신뢰도의 회복을 소망하는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납세한다면 이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밀려서 납세를 하는 경우보다 더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4) 목회자 납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토론이 교회 내적인 차원과 교회 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 내적인 차원은 범교단적인 차원에서의 합리적인 토론과 실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교회 전체의 차원에서 납세문제는 기본적인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

이 필요하다. 교단의 신학적 입장이나 다른 이유를 넘어서는 공동의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론의 내용을 열어 놓고 토론하고 교단의 내부적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나라의 관점과 선교한국을 이루는 관점에서 납세문제에 대해 토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 나타난 합의가 한국사회를 섬기는 일과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선의 실현에 기여할 경우, 이것은 한국교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오해를 해결하고 서로 간에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단순히 납세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공공의 이슈에 있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시민사회와 만나야 할 것이다.

5) 목회자 납세를 실시할 경우 각 교회와 목회자는 실제적인 준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납세를 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소득세 제안 쟁점”은 다음과 같다.⁵⁹⁾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는 실무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교회는 다음에 나오는 쟁점사항들 - (1) 세적등록 간소화 (2) 종교인세목으로 별도 신설여부 (3) 선교단체 등 비영리 종교단체 해당 여부 (4) 과세소득의 범위 (5) 외국인 단일세율체제와 구간별 단일세율체제 (6) 부교역자 주거환경 지원비 비과세 처리 (7) 정액 목회비/ 도서비/ 심방비 등 정액 경비 인정 여부 (8) 교단관리 연금가입을 국민연금 대신하는 정규 연금으로 인정여부 (9) 반기납부 (10) (별도) 부교역자 사택 - 에 대해 주목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59) “한국교회와 재정 - 성직자 소득납세를 중심으로”, 2013년 5월 6일 실천신학대학원 특강 자료집, 6-7.

■ 발제 3

자발적 납세의 윤리적, 선교적 효과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1. 들어가는 글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종교인 소득세 납세가 2013년 8월 입법예고 이후 지난 11월 5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공포되면서 논의가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실정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삶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전히 성경에서 요구하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납세에 관한 일반사회의 인식과 기독교인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가지는 목회자, 교회에 대한 인식을 점검함으로 목회자의 자발적 납세가 가지는 윤리적, 선교적 효과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납세에 대한 국민적 정서

스스로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욕구는 세금내기를 부담스러워하게 만든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본인의 것을 희생하면서 공동체를 위한 규범에 근거한 행위이며, 더불어 자발적 납세의식이 뒷받침될 때 그 본질적 의미를 회복할 수 있다.

전체 납세자의 약 40%가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세금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 저소득층마저 세금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왜곡된 인식이 형성된 상황⁶⁰⁾에서는 과도한 세금부담감의 원인이 되는 탈세자, 비정상적 납세자에 대한 반감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납세의식에 대한 실증적 사례로 2012년 7월에 실시한 조사⁶¹⁾와 2008년에 실시한 조사⁶²⁾결과를 인용하였다.

납세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요인으로 성실납세의향, 조세이해도, 조세형평도, 사회적 규범을 들 수 있다. 조세형평도는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세제도의 형평성으로 소득수준별 공평한 세부담(수직적 형평성), 비슷한 소득군의 납세자와 비교한 세부담의 공평성(수평적 공평성), 세금의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공공재 수준의 적정성(교환의 형평성)을 반영한다.⁶³⁾

60) 한겨레신문, 2012.10.12

61) 이해원 연구위원(한국조세연구원) 조사, 2012년

62) 박명호, 김봉근, 김정권 공동조사, 2008년

2012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세에 대한 이해도는 낮지만 스스로 성실납세하려는 경향은 높다. 이에 반해 수직적 조세형평성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소득 격차간 소득세부담비율이 왜곡되었다는 인식이다.

<표 1> 납세의식지표의 기술통계

지표	평균	최소값	최대값
성실납세의향	74.5	0	100
조세이해도	44.2	0	100
조세형평도	46.1	0	100
수직적 형평성	10.7	0	100
수평적 형평성	73.9	0	100
교환의 형평성	52.6	0	100
사회적 규범	52.6	0	100

(재정포럼, 2012.12, p30)

동일한 소득규모대비 직군별 조세형평성을 의미하는 수평적 조세형평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우리 소득세법체계가 직군별 구분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별 구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세 형평도지수는 2008년의 조사⁶⁴⁾결과값인 46.1과 2012년 조사결과값에 차이가 없다.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에 관한 결과로 보면 국민들은 소득간 과세형평성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3. 기독교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점

1) 기독교인, 목회자,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2013년 발표한 ‘한국기독교 분석리포트’의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일반 사회가 기독교, 기독교인, 목회자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분석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기독교인은 기독교인, 목회자, 교회활동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교인 개인차원과 목회자 개인차원의 신뢰도는 교회차원의 신뢰도보다 더 떨어진다.

63) 이해원,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재정포럼, 2012.12, p25

64)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조사, 박명호.김봉근.김정권, 2008.12

결과(긍정률)	전체	천주교인	불교인	무종교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19.8	34.0	16.1	18.3
목회자의 설교와 행동에 믿음이 간다	23.6	34.8	21.7	21.8
한국 교회의 활동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	28.6	47.5	24.8	25.8

한국교회를 불신하는 이유⁶⁵⁾중 ‘이기주의/이기주의 집단 같아서’(10.5%),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서’(9.4%), ‘목회자의 사리사욕이 심해서’(6.2%), ‘교회확장에만 관심이 있어서’(6.0%), ‘목회자/교회의 부정부패’, ‘도덕성결여’(6.1%), ‘매스컴에 보도되는 사건들 때문’(4.5%), ‘이익추구집단 같아서’(3.7%) 등 종교적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공성 관점으로 발생하는 불신 비율이 46.4%에 이른다.

반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이유로 사회봉사를 적극적으로 한다(44.8%)⁶⁶⁾는 점을 들고 있다.

2) 비종교인에 대한 태도

2004년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종교인들 스스로는 비종교인들을 따뜻하게 대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비종교인들은 종교인들로 따뜻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2> 비종교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한다

구분	그렇다 (매우+약간)	그렇지않다 (약간+전혀)	모름/무응답
전체	46.1	45.4	8.4
종교인별			
불교	46.2	45.9	7.9
개신교	33.6	63.5	2.9
천주교	44.0	50.0	6.0
비종교인	52.3	7.6	11.6

3) 현금사용에 대한 선호도

2004년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금사용용도에 대하여 개신교인들은 선교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부여한 반면 타종교인과 비종교인들은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회공공적 역할에 절대적인 비중을 부여하고 있다.

65)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2013.5, p168

66) 전계서, p167

<표3 현금사용에 대한 선호도>

구분	포교나 전도/ 선교	가난한 이웃 돕는 것	비슷하다	모름/무응답
전체	10.3	71.3	18.2	0.2
종교인별				
불교	7.0	79.8	13.2	0.0
개신교	24.9	50.1	25.0	0.0
천주교	13.1	69.6	17.3	0.0
비종교인	4.7	77.5	17.7	0.1

4) 목회자 개인소득세 납세에 대한 인식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2013년 발표자료에 따르면 기독교인 중 목회자 개인 소득세 납세 찬성하는 입장은 48.3%이고 반대하는 입장은 51.7%이다. 응답자 특성별 견해 차이를 분석해볼 때 여자, 60세이상, 1000명이상의 대형교회 출석자 경우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남자, 18~29세, 299명이하 소형교회, 기독교 입문층은 상대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⁶⁷⁾.

여전히 교회에 불신자, 초신자들은 사회공공성에 초점을 둔다.

4. 납세의 윤리적, 선교적 효과

1) 인식조사 응답자 속성별 인식 차이

종교인들은 종교 내부로 관심을 모으고, 사회를 품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나 비종교인들은 종교와 종교인들이 사회의 필요에 대해 무관심하고, 배타적이고 비종교인들을 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종교인들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인식하여 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를 접어버리는 현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이 교회내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비종교인들이기에 비종교인들이 교회와 목회자, 교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을 정확히 분별할 필요가 있다.

2) 조세형평성 인식

67) 전계서, p195

소득대비 조세부담율의 역진성이 발생하는 수직적 조세형평성은 낮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고조된 상황⁶⁸⁾이며, 그동안 직업별 과세체계를 달리하지 않았기에 수평적조세형평성은 상대적 충족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종교인의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필요경비 80%를 인정하는 경우 소득대비 세금 부담비율이 현저히 적은 수직적조세형평성과 수평적조세형평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

3) 자발적 납세가 가지는 의의

ㄱ) 납세가 가지는 의의

납세는 사회공공비용의 분담이라는 차원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 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기에 납세에 동참한다는 일반 사회가 가지는 조세형평성에 대한 만족도 지수를 높이며, 교회와 목회자의 언행에 최소한의 신뢰도를 부여하는 출발점이 된다.

납세를 한다고 기독교인의 언행에 신뢰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납세를 하지 않으면 ‘국민으로서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라는 윤리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교회가 외치는 복음을 껌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ㄴ) 자발성이 가지는 의의

법은 공동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체계를 규율하는 규정이다.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도덕이 있고, 도덕의 테두리를 넘어서 신앙이 있다.

법이 요구하는 선을 준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만 말씀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

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기에 수동적 납세는 최소한의 사랑이지만 자발적 납세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설명되며, 사랑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다.

교회는 선교와 구제활동에 드려진 헌금을 사용한다.

선교와 구제가 교회의 주요 목적사업에 해당하지만 일반 사회의 목적은 아니기에 때로는 교회의 선교와 구제활동이 교회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껌하되기도 한다. 그러기에 사회 일반 공동체가 원하는 교회의 공공성을 교회 스스로 실천함으로 비종교인이 판단하는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되며 교회가 외치는 복음에 신뢰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한다는 점에 선교적 가치가 있다.

68) 논리적으로 저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거론할 수 있으나 의미없다고 하겠다.

5. 나가는 글

교회가 사회의 필요에 무관심하고 내부적 언어로만 세상을 향해 외칠 때 신뢰받지 못하는 조직으로서 교회와 목회자, 교인들이 일반사회에서 설 자리를 상실한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교회가 가지는 사회공공성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만 한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발효되는 2015년까지는 여전히 법 해석차원보다는 목회자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납세여부가 결정된다.

결국 2014년까지라는 한정된 기한이 목회자의 자발성 여부를 표현할 수 있는 길지 않게 남은 시한이다.

우리만 사용하고 우리만 알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예수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심으로 인간들을 구원하려 오셨던 한 없는 그 사랑의 마음, 이사야가 외쳤던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라는 마음으로 사회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의 언어로 행하는 교회의 활동은 소득세 납세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목회자 납세 쟁점분석

고신총회 '종교인 과세 건에 대한 16가지 반대 이유'

1. 정교분리(헌법 제20조)의 헌법적 가치는 종교가 가진 특수성과 역사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종교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과세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와 종교와의 정교분리라는 헌법상의 가치를 고려하여 관습법적으로 종교인 과세 문제를 소득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이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목회자의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종래 목회자 사례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이 관습법이고, 관습법도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의 개정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해서만 개정 가능하다.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으로 법률이 규정해야 할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의 근거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시행령으로 법률인 관습법을 개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현 세법체계는 종교인의 성직자로서의 직무수행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므로, 만일 과세를 한다면 성직자가 대가를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종교인의 봉사는 대가성이 없는 봉사를 통해서 경쟁 일반도인 이익사회에서 지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안식과 생명과 희망을 주는 가족공동체로서의 봉사이다. 이 점이 종교인의 성직봉사와 소득세법이 다루는 경제활동과의 본질적인 차이점이다.

4. 종교인의 행위를 과세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38조의 의미를 왜곡하고,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까지도 부정하는 유물론적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신으로부터 떠난 것이다. 당면한 실용주의적인 공공정책을 중시한 나머지 대한민국의 기초인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와 본질적 내용을 부정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5. 신자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드리는 예배(제사)의 중요한 요소인 헌금의 사용은, 그 종교가 가진 경전이나 종단의 헌법에 따라서 실행되는 핵심적인 신앙행위이다. 따라서 정부는 헌금집행이 반사회적 혹은 반국가적 행태가 아니라면 절대적으로 간여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본 총회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교회가 원천징수 및 신고의무를 지는 것을 반대한다.

6. 그간에 있었던 종교인 과세운동이나 토론은 모두 반기독교 정서 확산이라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에서 출발했다. 우리는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소수의 인사들이 과도하게 문제를 일으키며, 기독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을 우려하고 주시하는 바이다.

7. 종교에 대한 철저한 세속주의적 접근을 거부한다.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 목사는 성직개념으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데, 성직의 구별이 없이 세속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처음부터 교회를 이념적으로 대하는 접근 방법이다. 이런 이념적인 논쟁에 빠지면 종교에 대한 건전한 논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사업장으로 보고 성직자를 교회단체에 고용된 근로자로 본다'는 과세의 전제가 철저하게 교회의 거룩성을 부인하고 세속화하는 그릇된 논리이므로, 종교인 소득세 과세를 반대한다.

8. 정교분리에 의한 종교의 영역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65년간 시행해온 제도에 따라서 신고납부해 온 것이지 탈세나 특혜가 아니다. 종교인들을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종교에 대한 박해가 됨을 인식해야 한다.

9.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은 각 종단의 헌법과 절차에 따라서 종교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 3자가 들여다 볼 것이 아니다. 한국교회는 모두 소속교단의 헌법과 정치체제에 따라서 예배와 헌금의 집행을 하는 것에 더 이상 제 3자의 개입을 신앙의 차원에서 거절한다.

10. 헌금하는 것과 헌금의 집행은 종교 자유의 본질적 영역이다. 교회는 교회법에 의해 다스려진다. 국가가 교회에 인정해주는 지위는 교회는 교회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나 교회의 과세에 대해서 자유로이 용인해 온 것이다. 국가의 법과 교회법의 관계는 변증법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세속 정부의 입장에서 교회의 재정 장부를 본다든지 원천징수 의무를 지운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종교나 국가 모두 다에게 불행한 일이 된다.

11. 이념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며 고소고발을 일삼을 때 과세당국이나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교회에 대한 과세제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 교회만이 십일조 명부 같은 투명한 헌금제도를 운용하는데 세무사찰 등 압력수단으로 이 명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경우, 타 종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기독교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2.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이 깨지고 정부가 세무사찰 등을 수단으로 하여 교회에 과도한 간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제 3자가 정부가 세무감사 등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13. 종래 가톨릭을 중심으로 하여 목회자 사례금에 대하여 법률이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개신교의 일부교단도 같은 태도를 취해왔으나, 과세가 아닌데 신고납부하는 경우와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과세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한다.

14.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면 정부가 언제든지 세무조사 및 세무사찰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교회와 목회자가 곧 바로 세무조사 내지 세무사찰 대상이 되어 정교분리원칙 및 종교 자유의 원칙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15. 현재 신고납부하고 있는 교단 및 가톨릭 등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왜 직접 부과권을 갖는 것으로 입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개세주의만을 내세우는 문제점이 있다.

16. 65년 동안 관습법으로 비과세 해왔고 영적인 생활에 중대하게 영향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결론부터 먼저 도출해내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 별 찬반 주장

반대하는 주장의 논점	찬성하는 주장의 논점
세법상 명시 규정이 없다.(1, 2)	법률이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무의미한 논점이며, 면세라는 명시규정도 없다. 법원 판례 역시 한시적이다.
관습법적으로 종교인 과세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종교계의 비과세는 관행이며 종교인의 자율에 맡겼다.(2)	장기간 불법정치자금이나 재벌의 탈세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이를 관행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한국의 조세정의는 공평과세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다. 아직 과세행정력 부족으로 과세하지 못하는 부분이 관행으로 용납될 수는 없다. 명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행자체가 사회적으로 수용될 때 관습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종교인 비과세가 사회저변의 인식에 용인된 것은 아니며 도리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교회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사회에 공헌하고 있으므로 그 사역을 수행하는 목회자에게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3)	교회가 하는 일과 목회자가 하는 일을 동일시할 수 없다. '교회=목회자'라고 보게 되면 교회가 현금으로 수령한 재정을 목회자를 통하여 선한 일에 사용하므로 이를 위해 수령하는 사례비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목회자는 교회공동체의 구성원일 뿐이다. 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직접 집행하는 재정과 구성원인 목회자 또는 성도들이 선한 일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차원의 선행으로 서로 별개 차원이다.
목회자들의 삶 자체가 나누는 삶이므로 세금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3)	일반국민들이 내는 세금 이상으로 목회자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일반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화자찬성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선한 일을 한다는 인정은 제 3자로부터 받을 때에만 그 타당성이 있다. 또한, 목회자의 섬김의 삶이 인정 받는다 할지라도 납세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분명한 사회의 동의(입법절차)가 있어야만 그 의미가 있다. 일반 사회에는 목회자 뿐만 아니라 희생의 삶을 실천하는 다른 직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목회자에게만 특혜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목회자가 납세를 하면 교회가 정치의 간섭을 받게 되고, 탄압에 약용될 수 있다.(10, 11, 14)	교회는 세법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기에 교회가 수령하는 현금에 대하여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교인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이러한 공익법인의 세제 혜택을 누리는 교회에 대하여 국가는 목회자 납세여부와 무관하게 교회가 받은 현금을 목적사업에 잘 사용하였는지 지금도 언제든 조사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는 국가로부터 많은 보조를 받으니 세금을 내지만 우리나라는 교회와 목회자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없다.	목회자가 납세함으로써 일반인과 비교하여 차별 받는 것은 없다. 국가로부터의 혜택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냄으로써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금은 국가공동체를 운영해나가기 위해 구성원인 국민들이 그 비용을 분담하는 성격이므로, 특정인이 세금으로 분담하지 않는 비용은 다른 국민들에게 추가부담이 된다.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은밀히 구제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려 노력한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다. 즉, 국민으로서 분담해야 의무인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구제에 나서는 것은 이웃사랑을 과시하는 행위이다. 세금은 '이웃사랑의 최소한의 실천행위'이다.
교인들에게 이미 과세한 소득으로 형성된 사례비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두 번 과세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이중과세방지의 개념이다. 교인들에게 귀속된 소득에 따라 납세한 후의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례비는 소득의 귀속 주체가 각각 구별되고, 소득의 성격도 각각 다르므로 교인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목회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별개의 납세이다. 따라서 이중과세는 성격상 납세문제의 논점이 되지 않는다. 시민들의 소득 중 납세 후 기부금으로 금여를 받는 복지기관의 직원의 경우도 관점은 동일하다.
현행 과세체계는 목회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대가를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종교활동을 경제활동으로 취급하는 것은 유물론적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종교자유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다.(4, 7)	목회자의 사역이 근로인가 아닌가는 신학적으로 별개로 논의할 부분이며, 세법에 관하여서는 세법의 관점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 하나님에게 고용되었으며 또한 이 땅에서 사역하는 교회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조직과 사업장에 속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고 있다. 하나님에게 고용되었다는 해석으로 국가공동체의 사회적 합의를 임의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떤 일이 성스러운지 아닌지는 호칭이나 신분이 아니라 그 과정과 결과로 판단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직업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며 성직이다. 혜택 받는 자리에 성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외로운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성직을 얘기하는 것이 바른 관점이다.
현금의 사용은 핵심적 신앙행위이므로 반사회적 행태가 아니라면 정부가 간여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교회가 원천징수 및 신고의무를 지는 것을 반대한다. 정교분리로 정부가 종교기관에 대한 세무감사를 해선 안된다.(5, 8, 12)	정교분리는 국가가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또한 종교집단이 특정권력의 탄생에 기여하거나 비호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견제와 상호 존중에 핵심이 있으며, 목회자의 납세문제는 이러한 취지와 무관하다. 즉, 정당간의 권력창출 경쟁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이라기보다 행정부의 국가운영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사안이다. 현금의 직접적 사용에 있어 교회는 이미 수많은 배려를 받고 있으며, 목회자의 납세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동시에 사회적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지금까지 다양한 직간접세(주민세, 유류세, 교육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등등)를 납부하던 교회와 목회자들이 유독 목회자의 소득세에 대해서만 강력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가깝다.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은 납세제도가 아닌 종교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9)	납세는 회계투명성 확보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다. 종교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된다면, 그 결론 역시 목회자의 납세가 적절하다는 데에 다다를 것이다.
종교인 과세운동은 반기독교적 정서확산이라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에서 출발했다.(6)	종교인 납세는 말구유와 십자가로 낮추시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관점에서 제기된 사안이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고 자성하고 초라해질지라도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면 지금의 과정은 십자가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목회자 근로소득세 납세교회 사례수집 현황

	교회명	교단	지역	규모	목회자	시행시기	신고대상범위
1	정동교회	기장	서울	중형교회	박중화	1999년부터	파트사역자까지
2	고기교회	예장통합	용인		안홍택		
3	나들목교회	독립교회	서울	중형교회	김형국	창립(2001)부터	파트사역자까지
4	남서울은혜교회	예장합신	서울	중형교회	박완철		
5	너머서교회	예장통합	일산		안해용	2008년부터	
6	높은뜻 광성교회	예장통합	서울	중형교회	이장호	창립(2008)부터	전임사역자까지
7	높은뜻 정의교회	예장통합	서울	중형교회	오대식	창립(2008)부터	전임사역자까지
8	높은뜻 푸른교회	예장통합	서울	중형교회	문희곤	창립(2008)부터	전임사역자까지
9	높은뜻 하늘교회	예장통합	용인		(청빙중)	창립(2008)부터	전임사역자까지
10	다니엘새시대교회	예장고신	서울		박희명		
11	다르림교회	예장통합	서울		김병년		
12	더함공동체교회	독립교회	인천		이진오		
13	만나교회	기감	분당	대형교회	김병삼		
14	명성교회	예장통합	서울	대형교회	김삼환	약 10여년전부터	
15	목산침례교회	기침	서울	대형교회	윤창선		
16	백주년기념교회	독립교회	서울	대형교회	이재철	2005년부터	파트사역자까지
17	부천예인교회	독립교회	부천		정성규		
18	부천평안교회	예장합신	부천		원영대		
19	분당샘물교회	예장고신	분당	중형교회	최문식	1998년부터	전임사역자까지
20	분당우리교회	예장합동	분당	대형교회	이찬수		
21	빛과소금교회	예장합동	일산		신동식		
22	빛소금교회	예장고신	서울		김낙춘		
23	사랑의교회	예장합동	서울	대형교회	오정현	약 10여년전부터	
24	새문안교회	예장통합	서울	대형교회	이수영		
25	서문교회	예장통합	서울	중형교회	손달익		
26	서울영동교회	예장고신	서울	중형교회	정현구		
27	선한목자교회	기감	성남	대형교회	유기성	약 10여년전부터	파트사역자까지
28	성광교회	기감	평택		유인덕	2013년부터	
29	소망교회	예장통합	서울	대형교회	김지철	1993년부터	
30	순복음인천교회	기하성	인천	대형교회	최성규	1983년부터	
31	여의도순복음교회	기하성	서울	대형교회	이영훈	약 10여년전부터	파트사역자까지
32	연동교회	예장통합	서울	대형교회	이성희		
33	열린교회	예장합동	안양	대형교회	김남준	2010년부터	파트사역자까지
34	열린문교회	예장합신	수지		윤여성		
35	영락교회	예장통합	서울	대형교회	이철신	1960년대부터	전임사역자까지
36	오륜교회	예장합동	서울	대형교회	김은호	2005년부터	
37	온누리교회	예장통합	서울	대형교회	이재훈	약 20여년전부터	
38	이한교회	예장통합	서울		신기형		
39	전주안디옥교회	기장	전주	중형교회	박진구		
40	주님의교회	예장통합	서울	대형교회	박원호		
41	주안장로교회	예장통합	인천	대형교회	주승중		
42	지구촌교회	기침	분당	대형교회	진재혁		
43	충현교회	예장합동	서울	대형교회	김동하	약 20여년전부터	전임사역자까지
44	푸른솔송곡교회	예장합동	서울		김광석	2013년부터	
45	향린교회	기장	서울	중형교회	조헌정		
46	홍성교회	예장합동	서울	중형교회	서경철	2013년부터	

사례 수집 대상	수집 사례 검토
1)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회원 교회 중 2)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소득세신고 관련 상담 신청 교회 중 3) 201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지원활동 신청 교회 중 4) 2013년 11월 재정결산서 공개 요청한 34개 주요 교회 중 5) 기타 경로의 수시 수집	통합, 합동, 고신, 합신, 기장, 기침, 기하성, 독립 등 다양한 교단에서 대형 중형 소형 교회 모두 수집 사례에 포함 대부분의 교회가 수도권에 위치한 교회라는 점 재검토 필요 1960년대 영락교회 1980년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필두로 1990년대에 증가하여 2000년대 들어서 대부분 납세를 시작 창립부터 납세한 교회들도 존재, 시기와 대상은 계속 확인 중

■ 단체소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소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국교회 구조회복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회재정운영에 있어 성경의 원리에 근거하여 건강하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하여 도출된 결과들을 교육하고 배포하고 실천하여 교회현장에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가는 운동을 합니다.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문의

전화: 02-741-2793 팩스: 02-741-2794 홈페이지: www.cfan.or.kr 이메일: cfan05@hanmail.net

● 목적(사명)

한국교회가 재정을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온전한 교회로서 대사회적 신뢰를 받도록 한다.

● 운동전략 및 실행계획

1. 연구와 개발 : 성경적 교회재정관 정립, 한국교회 교회재정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모범사례 발굴, 대안 제시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2. 배포 및 홍보 : 홈페이지 운영, 재정사용 원칙제시, 재정정관 및 조례 보급, 재정관리 매뉴얼화 및 책자 보급, 회계프로그램 보급 및 재정담당자 교육
3. 교회현장 운동 : 목회자납세 운동, 재정결산서공개 운동
4. 교육과 컨설팅 : 세미나 및 강좌 개최 및 연구물 발표, 재정문제 상담, 건강한 역할모델 육성

● 함께하는 단체들

교회개혁실천연대

주소_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 영남빌딩 205호

전화_02-741-2793 팩스_02-741-2794

홈페이지_www.protest2002.org 이메일_protest@protest2002.org

기독교경영연구원

주소_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2 신원빌딩 1층

전화_02-718-3256 팩스_02-718-3528

홈페이지_www.kocam.org 이메일_kocam@kocam.org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소_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전화_02-794-6200 팩스_02-790-8585

홈페이지_www.cemk.org 이메일_cemk@hanmail.net

바른교회아카데미

주소_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19-8번지 청어람

전화_02-777-1333 팩스_02-319-1103

홈페이지_www.goodchurch.re.kr 이메일_gcacademy@hanmail.net

재단법인 한빛누리

주소_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7가 서광빌딩 305호

전화_02-924-0240 팩스_02-924-0243

홈페이지_www.thebrightfoundation.org [이메일_thebrightfd@gmail.com](mailto:thebrightfd@gmail.com)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